

발 간 등 록 번 호

71-6410000-001145-01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2022 경기도 장애인 학대·차별 현황보고서



 경기도피해장애인센터



 경기남부피해장애인센터



 경기북부피해장애아동센터

발 간 등 록 번 호

71-6410000-001145-01



2022 경기도 장애인 학대·차별 현황보고서





목차

- 용어설명 11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및 차별 사례 지원 절차..... 18
- 피해장애인쉼터 지원체계 23

- I. 사업개요 25
 -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7
 - 2. 피해장애인쉼터 29
 - 3. 피해장애아동쉼터 31

- II. 주요현황 33
 - 제1장 신고접수 분석 35
 - 제2장 장애인학대 사례 분석 43
 - 제3장 장애인차별 사례 분석 77
 - 제4장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 81

목차

Ⅲ. 피해장애인 주요 지원 사례	91
1. 신체적 학대	92
2. 정서적 학대	94
3. 성적 학대	96
4. 경제적 착취	98
5. 유기·방임	101
6. 차별 사례	103
7. 피해장애인쉼터 주요 지원 사례	105
부록	107
1.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소개 및 현황	108
2. 경기도 내 인권 관련 기관 안내	112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113



표 목차

[표 1-1] 2022년 신고접수 현황	36
[표 1-2] 월별 신고접수 현황	37
[표 1-3] 시군별 신고접수 현황	39
[표 1-4] 신고접수 방법 현황	40
[표 1-5] 신고접수 경로 현황	41
[표 2-1] 장애인학대 의심 신고 건수 현황	44
[표 2-2] 신고자 유형	44
[표 2-3]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46
[표 2-4] 비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48
[표 2-5] 장애인학대의심 사례 조사 및 실시율 현황	49
[표 2-6] 사례판정 현황	50
[표 2-7] 상담 및 지원 현황	51
[표 2-8] 종결사례 현황	52
[표 2-9] 모니터링 현황	53
[표 2-10] 학대 사례 현황	54
[표 2-11] 피해장애인 성별 현황	55
[표 2-12] 피해장애인 연령 현황	56
[표 2-13]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 현황	57
[표 2-14] 피해장애인 장애 정도 현황	58
[표 2-15] 피해장애인 거주 형태 현황	59
[표 2-16]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현황	60
[표 2-17] 학대행위자 성별 현황	61
[표 2-18] 학대행위자 연령 현황	62
[표 2-19]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 현황	64
[표 2-20]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동거 여부 현황	66
[표 2-21] 학대행위자 신고의무자 여부 현황	67
[표 2-22] 학대 발생 장소 현황	68
[표 2-23] 피해장애인쉼터 입소 현황	70
[표 2-24] 피해장애인쉼터 퇴소 현황	71

목차

표 목차

[표 2-25] 피해장애인쉼터 평균 이용기간 현황	72
[표 2-26]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연령 현황	73
[표 2-27]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장애유형	74
[표 2-28]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학대유형	75
[표 3-1] 장애인차별 신고접수 현황	78
[표 3-2] 장애인차별 상담 및 조사 현황	78
[표 3-3] 장애인차별 유형 현황	79
[표 3-4] 장애인차별 처리결과 현황	80

그래프 목차

[그래프 1-1] 2022년 신고접수 현황	36
[그래프 1-2] 신고접수 현황 비교 : 2021, 2022년	36
[그래프 1-3] 월별 신고접수 현황	37
[그래프 1-4] 신고접수 방법 현황	40
[그래프 1-5] 신고접수 경로 현황	41
[그래프 2-1] 신고자 유형	44
[그래프 2-2]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47
[그래프 2-3] 비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48
[그래프 2-4] 장애인학대의심 사례 조사 및 실시율 현황	49
[그래프 2-5] 사례판정 현황	50
[그래프 2-6] 학대의심사례 현황	51
[그래프 2-7] 상담 및 지원 횟수	51
[그래프 2-8] 사례별 상담 및 지원 횟수	51
[그래프 2-9] 종결사례 현황	52
[그래프 2-10] 당해 연도 사례종결률 현황	52
[그래프 2-11] 모니터링 실시 현황	53
[그래프 2-12] 모니터링 지원 현황	53
[그래프 2-13] 장애인학대 유형 분석	54
[그래프 2-14] 피해장애인 성별 현황	55
[그래프 2-15] 피해장애인 연령 현황	56
[그래프 2-16]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 현황	57
[그래프 2-17] 피해장애인 장애 정도 현황_1	58
[그래프 2-18] 피해장애인 장애 정도 현황_2	58
[그래프 2-19] 피해장애인 거주 형태 현황	59
[그래프 2-20] 거주 형태_남부	59
[그래프 2-21] 거주 형태_북부	59
[그래프 2-22]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현황	60
[그래프 2-23] 수급자 여부_남부	60
[그래프 2-24] 수급자 여부_북부	60

목차

그래프 목차

[그래프 2-25] 학대행위자 성별 현황	61
[그래프 2-26] 학대행위자 성별_남부	61
[그래프 2-27] 학대행위자 성별_북부	61
[그래프 2-28] 학대행위자 연령 현황	62
[그래프 2-29]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_가족 및 친인척	65
[그래프 2-30]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_신고의무자	65
[그래프 2-31]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_비신고의무자	65
[그래프 2-32]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동거 여부 현황	66
[그래프 2-33] 동거 여부_남부	66
[그래프 2-34] 동거 여부_북부	66
[그래프 2-35] 신고의무자 여부 현황_1	67
[그래프 2-36] 신고의무자 여부 현황_2	67
[그래프 2-37] 학대 발생 장소 현황	69
[그래프 2-38] 피해장애인쉼터 입소 현황	70
[그래프 2-39] 피해장애인쉼터 퇴소 현황	71
[그래프 2-40] 피해장애인쉼터 평균 이용기간 현황	72
[그래프 2-41]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연령 현황	73
[그래프 2-42]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장애유형	74
[그래프 2-43]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학대유형	75
[그래프 3-1] 장애인차별 상담 및 조사 현황	78
[그래프 3-2] 장애인차별 유형 현황	79
[그래프 3-3] 장애인차별 처리결과 현황	80

그림 목차

[그림 1] 도(道)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 사례지원 체계도	21
[그림 2] 도(道)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차별 사례지원 체계도	22
[그림 3] 도(道) 피해장애인쉼터 지원 체계도	23
[그림 4] 도(道) 피해장애아동쉼터 지원 사업수행방법	24



2022 경기도 장애인 학대·차별 현황보고서

용어설명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및 차별 사례지원 절차
피해장애인쉼터 지원체계

용어 설명

기본개념

◆ 장애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 장애유형

장애유형은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크게 분류되고, 세부적으로 15가지 유형으로 나뉨(「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구분		장애유형
신체적 장애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주요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정신장애

◆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그리고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 장애 정도

2019년 7월부터 1~6급의 등급으로 장애 정도를 구분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현재는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조사, 응급보호, 사후관리 등의 장애인학대 대응 업무와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

장애인학대

◆ 장애인학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

구분	개념
신체적 학대	폭행, 상해, 감금 등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정서적 학대	협박, 괴롭힘, 모욕 등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성적 학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장애인에 대한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장애로 인한 취약성을 이용한 재산·노동력의 착취, 재산적 권리의 침해 등 장애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장애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장애인을 버리는 행위
방임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장애인의 기본적인 보호나 치료 등을 소홀히 하거나 장애인이 자신에 대한 보호·치료 등을 포기·거부하는 행위

- 중복 학대 : 하나의 학대 사건에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의 여러 학대유형이 동반되는 경우
- 노동력 착취 : 경제적 착취의 대표적 행위 중 하나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를 가로채는 등 피해자의 노동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 보호의무자 : 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 피해장애인

학대피해를 입은 장애인

◆ 학대행위자

장애인학대 행위를 한 사람

◆ 재가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경우를 말함

◆ 집단이용시설

다수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거주시설 및 이용시설 등을 말함. 대표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교육기관, 미신고시설 등이 이에 해당

장애인차별

◆ 장애인차별

구분	개념
직접차별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간접차별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광고에 의한 차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장애인차별 유형

구분	개념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관계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경우 •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의 개조와 같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입학·전학을 거부·강요하는 경우 • 모든 교육 활동에 있어 장애 학생의 참여를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 교육 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
재화/용역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의를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등 <p>※ 재화와 용역 : 재화는 가치를 지닌 물품을 의미하고, 용역은 가치를 지닌 서비스를 의미</p>
보험/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가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등(금전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 가입 등)
시설물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시설물의 이용과 관련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
이동/교통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등
정보 접근/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법인·공공기관 등에서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접근하는 데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등
문화/예술/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관광·체육 시설의 사업자·관리자가 장애인이 해당 활동을 참여하면서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등

구분	개념
사법/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등이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에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는 경우 등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부성권, 성 등 :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입양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성에 관한 권리 및 이를 표현하고 누릴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 등 • 가족, 가정 및 복지시설 :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에서 교육권, 재산권, 거주·이전, 외부와의 소통 등에 있어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장애인의 동의 없이 과중한 역할이나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장애인의 외모·신체를 공개하는 경우 등 • 건강권 :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이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등 •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 장애가 있는 여성·아동임을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경우 등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통계방식에 따라 내용 정리

◆ 장애인차별 지원(처리결과)

구분	개념
개선 요구(행정처분 요구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가 된 기관에 대한 지역기관의 직접적 개선 요구(종사자 교육, 지침 변경 등)나 소관 행정청에 문제가 된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 관리 감독기관에 문제가 된 기관의 감사 요구, 신고, 진정이나 민원 제기(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외) 등을 말함
고발·수사 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사건을 고발하거나,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당사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진정 서류 작성을 지원하거나, 직접 진정하는 경우
법률상담 및 절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차별)사례와 관련된 법률상담을 하거나,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절차 안에서 절차지원을 하는 경우
소송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혹은 법률구조 기관 등을 통하여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민·형사·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대리인을 선임하여 지원하는 경우
조정·중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 및 관련된 사람들을 조정 및 중재하여 문제를 해결한 경우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상담, 유관기관 정보 문익와 같은 정보를 제공한 경우
조사 중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중 기관의 개입 없이 해결된 경우
정서적 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에 대한 불만, 하소연, 고충 등을 호소하는 당사자 및 내담자에 대한 위로나 지지를 한 경우
타 기관 및 자원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에서 직접 지원을 하지 않고 타 기관 및 자원을 연계하는 경우
당사자 대응 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접수 후 지원과정에서 당사자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
지원대상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타 기관에서 이미 지원하는 등 지원이 불필요한 경우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신고접수

◆ 신고접수

장애인학대(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포함)가 의심되는 사례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공식적으로 알게 되는 것

◆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

◆ 일반사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신고 중 차별, 개인적 분쟁, 정보 문의 등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는 요소가 없는 사례

◆ 인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이 신고 이외의 경로로 장애인학대 사건을 알게 된 경우

◆ 연계

타 기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제외한 외부기관)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지원을 함께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

◆ 이관

특정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사례가 피해자의 거주지 이전, 기관 간 협의 등으로 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넘어가는 것. 사례에 대한 관리 권한은 이관받은 기관으로 넘어감

◆ 신고의무자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제2항)

◆ 비신고의무자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신고의무가 없는 사람이 장애인학대를 신고한 경우 이들을 비신고의무자라고 함. 본인, 가족 및 친인척, 타인, 신고의무자가 아닌 기관종사자, 파악 안 됨으로 분류함

- 가족 및 친인척 : 피해장애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그 외 친척
- 유관기관 종사자 :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종사자로 일반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신고의무자가 아닌 공공기관 종사자, 교직원이 아닌 교육기관 종사자, 의료인이 아닌 의료사회복지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 신고의무자가 아닌 장애인단체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과 같은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신고의무자가 아닌 아동·노인관련기관 종사자, 청소년·여성·노숙인·이주민 등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 타인 : 피해장애인의 동거인, 이웃,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고용주, 모르는 사람
- 파악 안 됨 : 신고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거나 신고자가 밝히지 않아 알 수 없는 경우

학대조사 및 사례판정

◆ 학대조사

신고접수된 장애인학대 의심사례가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모든 형태의 조사과정. 이 과정에서 피해자 및 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면담, 증거 및 입증 서류 확인이 이루어지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 응급조치가 동시에 실시됨

◆ 응급조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장애인학대 현장에 출동했을 때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안전한 곳에서 일시 보호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이송하여 검사, 치료를 받게 하는 조치(「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1항 및 제2항)

◆ 사례판정

신고접수된 사례가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절차.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 사례는 학대 사례로 판정하고, 장애인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는 잠재위험사례와 비학대 사례로 판정

구분	개념
학대 사례	학대조사 결과 장애인에 대하여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사례
비학대 사례	학대조사 결과 장애인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
잠재위험 사례	학대조사 결과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명확히 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사례로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학대 예방을 위해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례

◆ 사례회의

신고접수된 사례가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사례의 내용을 내부적으로 공유·논의하여 사례 지원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결정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회의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제2항 제4호에 따라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위원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례회의에서 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유보된 사례에 대하여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논의하여 사례와 관련된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

◆ 재학대 사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로 판정된 사례 중 개입종료되었다가 다시 신고접수되어 학대로 판정된 사례

◆ 장애인학대 지속 기간

최초 장애인학대가 시작된 시점부터 발견 시점까지의 기간

◆ 장애인학대 발생빈도

장애인학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횟수

피해자 등 지원

◆ 피해장애인 지원

학대 사례로 판정한 후 피해자에 대한 학대 후유증 감소, 학대 재발 방지, 피해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으로 의료지원, 심리지원, 거주지원, 사법지원, 복지지원, 교육지원, 중재지원, 진정지원, 상담지원, 기타지원으로 분류함

- 의료지원 : 학대로 인하여 발생한 질환 등의 치료와 피해 회복을 의료적으로 돕는 것으로 응급의료조치, 검진 또는 진단, 통원 및 입원치료 등을 말함
- 심리지원 : 피해장애인의 심리·정서적 회복을 위하여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게 심리평가 및 진단, 심리 상담 및 치료 등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함
- 거주지원 : 피해장애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주공간 마련에 관한 지원으로 응급보호, 임대주택과 같은 재가에서의 거주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와 같은 거주시설에서의 거주지원 등이 있음
- 사법지원 :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피해장애인이 입게 된 손해의 회복, 후견인 선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해자 신뢰관계 동석 등 사법적인 절차와 관련된 지원을 말함
- 복지지원 : 장애인등록 절차를 연계하거나, 공공 및 민간 영역의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피해장애인에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자원을 연계하는 지원을 말함
- 예방교육지원 : 피해 회복과 학대 예방을 위해 피해자, 가족, 행위자, 관련자 대상의 학대 예방 교육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외부 자원을 연계하여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말함
- 학업지원 : 피해장애인의 교육을 위한 협의나 신청, 연계, 전학 신청, 등·하교 지원 등 학업을 위한 지원을 말함(2022년 신설된 지원 유형)
- 중재지원 : 피해장애인과 학대행위자가 법적절차로 가지 않고 당사자들간의 분쟁을 조정하여 화해를 이끌어내는 지원을 말함
- 진정지원 : 피해장애인이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같은 국가기관에 진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직접 진정하거나 피해장애인의 진정 과정을 돕는 지원을 말함
- 상담지원 : 의료·심리·거주·사법·복지·교육·중재·진정 외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이뤄지는 정서적 지지, 진행 경과 안내 등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상담을 말함
- 기타지원 : 어떤 유형에 포함되지 어려운 지원으로 피해자의 이동을 목적으로 지원하거나, 다수의 복합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함

◆ 상담 및 지원

신고접수 이후부터 사례종결 전까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이 피해자, 가족, 행위자, 관련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통칭함

◆ 사례종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마치는 단계로 사례종결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은 실시하지 않음

◆ 사후 모니터링

사례종결 이후 일정기간 동안 피해자의 안전과 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 관리 업무를 말함

◆ 개입종료

사례에 대한 개입을 완전히 마치는 것을 말함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및 차별 사례지원 절차

도(道)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및 차별 사례에 대해 상담·접수, 현장 조사(응급조치), 사례 회의(학대사례판정위원회 회의), 피해자 지원, 모니터링, 종결의 과정으로 기능을 수행함

사례지원 개요

사례지원이란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및 차별 사례의 신고(상담)접수, 현장조사, 응급조치, 피해자 등에 대한 회복 지원, 사후 모니터링 등 사례에 대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개입절차 전반을 말함

절차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및 차별 사례는 신고(상담)접수부터 개입종료까지의 절차로 진행



- 장애인학대 사례는 사례판정 이후 피해자지원, 사후 모니터링을 거쳐 사례의 개입을 종료함
- 장애인학대 사례 외 잠재위험사례로 판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지원을 실시하지 않고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비학대 사례로 판정한 경우 피해자 지원, 사후 모니터링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신고접수

누구든지 장애인학대를 알게 되면 장애인학대 신고번호(1644-8295)로 신고할 수 있음. 전국 19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신고를 받으며, 신고자와 가까운 위치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사례를 담당함. 2021년부터 전화 외에도 문자(SMS), 카카오톡으로 신고할 수 있음. 누리집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고, 직접 기관을 방문하는 내방 신고도 가능함

◆ 학대조사

신고접수를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은 신고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학대조사를 실시함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의 장애인에게 현장조사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 동행하여야 함

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은 피해장애인 및 학대행위자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 조사나 질문을 실시함. 조사 시에는 피해장애인 및 관련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
조사 시 장애인학대와 관련있는 자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은 학대조사 시 피해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인도하여야 함



◆ 사례판정

학대조사 이후 장애인학대 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의사 결정 회의인 사례회의에서 학대 여부를 판정함. 사례회의 시 판정이 어렵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면 장애인학대사례 판정위원회에서 학대 여부를 판정할 수 있음

◆ 피해자 등 지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학대 피해의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실시함. 장애인학대 사례로 판정되면 조사된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향후 지원과정 및 내용, 계획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피해자 지원 계획을 수립함

사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며 세부 내용으로는 의료지원, 심리지원, 거주지원, 사법지원, 복지지원, 예방교육지원, 학업지원, 중재지원, 진정지원, 상담지원 등을 실시함



◆ 사례종결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마치면 사례회의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완료되었는지 평가하고, 사례종결 여부를 결정함. 사례회의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 지원 계획을 수정·변경하여 피해자 지원을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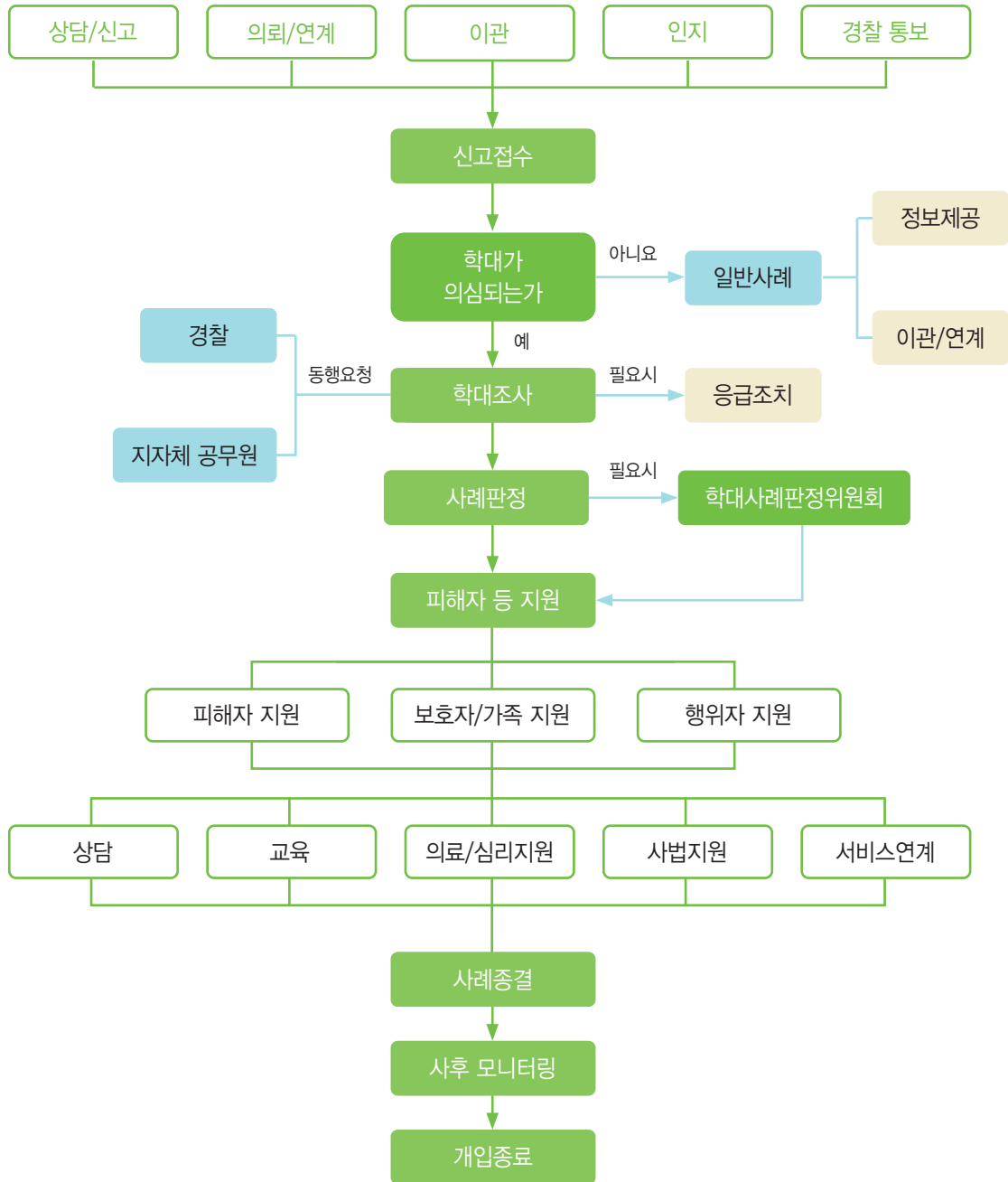
◆ 사후 모니터링

피해자 지원을 마치기로 결정하면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장애인의 재학대 발생 여부 및 안정적인 생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함

◆ 개입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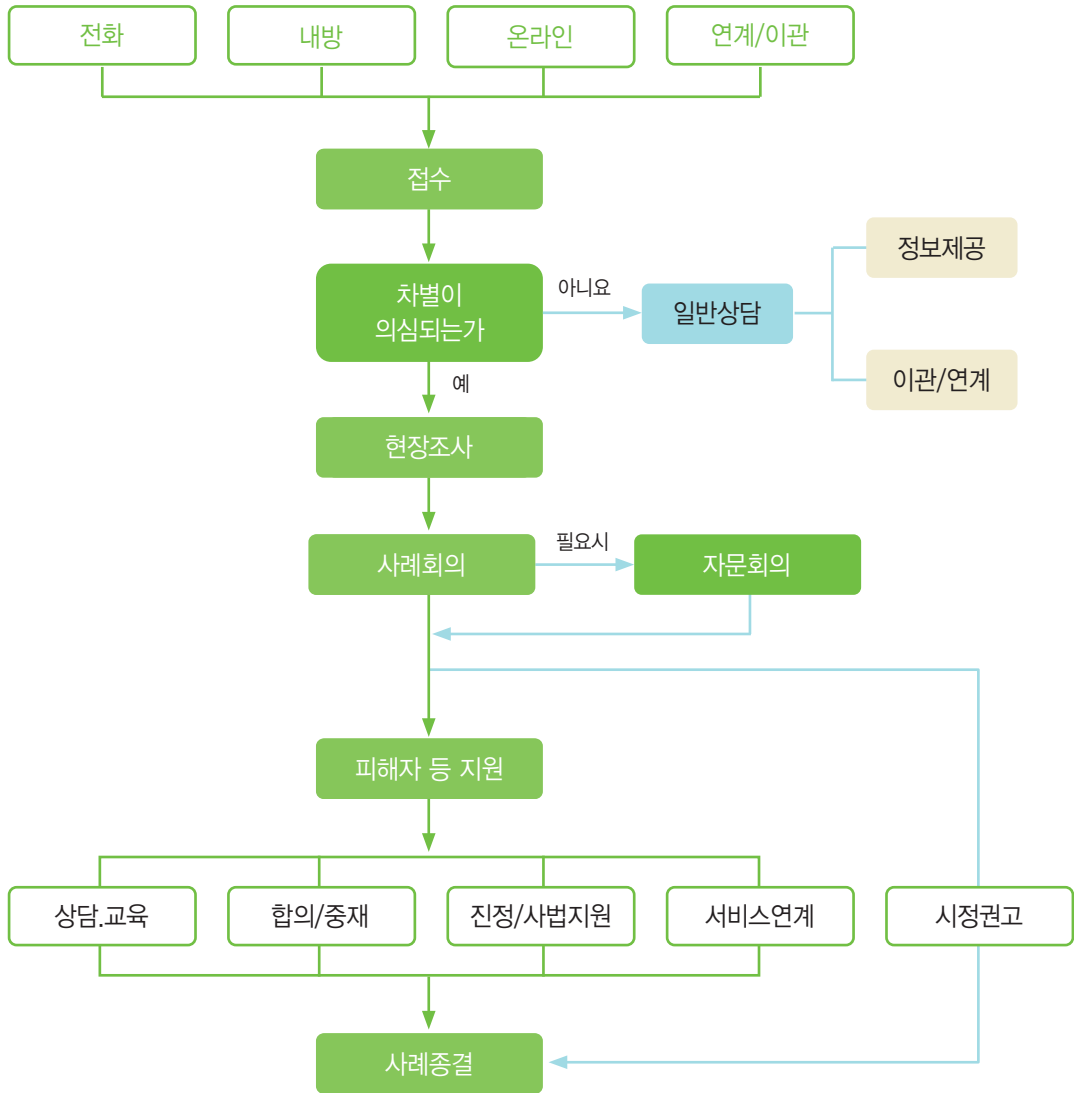
사후 모니터링 기간 내 재학대 등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례의 개입을 최종적으로 종료함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절차



[그림 1] 도(道)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 사례지원 체계도

장애인차별 사례지원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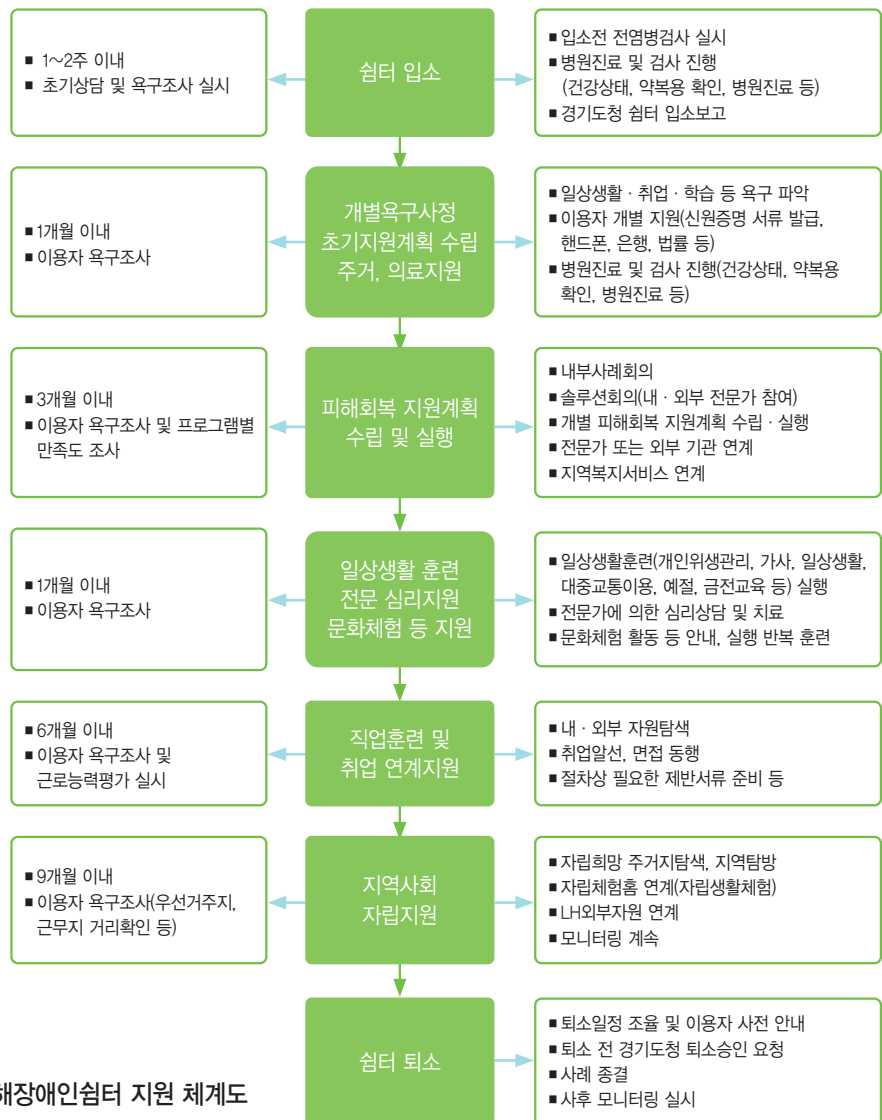
[그림 2] 도(道)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차별 사례지원 체계도

피해장애인쉼터 지원체계

◆ 피해장애인 지원사업

학대 등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안전한 공간과 숙식을 제공하며, 정서적 안정 및 심리적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과, 신체적 피해에 대한 전문 의료서비스, 일상생활 능력이 저하된 피해 장애인에게 필요한 능력들을 훈련하고, 문화여가를 위한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며, 직업 정보 제공 및 취업훈련을 통해 자립의지 고취 및 자립능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말함

◆ 피해장애인쉼터 지원체계



[그림 3] 도(道) 피해장애인쉼터 지원 체계도

피해장애아동쉼터 지원체계



[그림 4] 도(道) 피해장애아동쉼터 지원 사업수행방법



I

2022 경기도 장애인 학대·차별 현황보고서

사업개요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 피해장애인쉼터
3. 피해장애아동쉼터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한 장애인 권익옹호 강화와 장애인차별을 예방하고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가. 사업 근거 및 개요

- 설치 및 운영 사업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II 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_경기도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업무편람_경기도
 -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규정

- 사업개요
 -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 조사, 응급 보호
 -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지원
 - 장애인차별 상담 및 조사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실태조사
 - 장애인 인권증진 및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예방 등 교육
 -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 계획 시·군 이행사항 모니터링



2. 피해장애인쉼터

가. 사업 근거 및 개요

- 설치 및 운영 사업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의13,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7
 -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2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II 권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피해장애인쉼터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계약서_경기도
 - 피해장애인쉼터 사무업무편람_경기도
 - 경기도피해장애인쉼터,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 운영규정

□ 사업개요

- 피해장애인 보호 및 숙식제공
- 피해장애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 장애인학대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지원
- 일상생활 훈련, 사회참여활동, 직업재활훈련 등 사회복지 및 자립지원
-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피해장애인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사업 수행기관

□ 기관 현황

구분	소계	경기도피해장애인쉼터 보듬 (경기 남부지역 관할)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 (경기 북부지역 관할)
위탁기간	5년	2022.01.01.~2026.12.31.	2021.12.30.~2026.12.29.
소재지	-	경기도 내 (비공개)	
운영인력	13명	7명(원장 1, 팀장 1, 직원 5)	6명(원장 1, 팀장 1, 직원 4)
예산액	848백만원	460백만원(국비 92, 도비 368)	388백만원(국비 92, 도비 296)

□ **쉼터별 특성**

- 경기남부피해장애인쉼터의 경우 전국 쉼터 최초 ▲독립형¹⁾, ▲남녀구분형²⁾, ▲ LH임대주택형³⁾, ▲지역사회통합형⁴⁾ 모델을 도입하여 운영
-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의 경우 2015년 보건복지부 인권침해피해장애인쉼터 사업 승인을 받아 시범 운영되었던 전국 4곳(서울, 경기, 경북, 전남) 중 1곳으로서 현재 장애아동을 포함한 여성장애인만 입소하는 여성 장애인 전용 쉼터로 운영

□ **쉼터별 지원항목**

상담	심리치료	신체적 치료	신변 자립훈련	사회 참여활동	사례종결	모니터링
사법지원	지역정착 지원	문화여가활동	직업훈련	성교육	인권교육	소방안전교육

- 학대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전문 의료서비스 및 심리지원을 통하여 심리적 안정과 신속한 신체적·정신적 피해회복을 도모함
- 학대 또는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일상생활 능력이 저하된 피해자에게 신변자립훈련 및 여러 교육을 통해 자립능력을 강화시키도록 지원함
- 피해장애인의 욕구와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최대한 대상자가 원하는 방향의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안전한 공간 확보를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함
- 피해장애인 스스로 문화여가활동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함

□ **입소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학대 등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장애인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자체 등이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 미등록 장애인의 경우에도 피해장애인 쉼터에 보호가 필요하다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이 인정하는 경우 입소 가능

1) 기존 쉼터는 장애인주단지보호센터 통합형 설치
 2) 전국 최초 남녀 주택 구분하여 별도 주택으로 설치
 3)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계약을 통해 매입임대주택에 설치
 4) 변화가와 이웃한 주택가에 설치하는 등 지역사회 밀착형으로 설치



3. 피해장애아동쉼터

가. 사업 근거 및 개요

□ 설치 및 운영 사업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
-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2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II 권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피해장애인쉼터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계약서_경기도
- 경기도 피해장애아동쉼터 사무업무편람_경기도
- 경기도 피해장애아동쉼터 운영규정

□ 사업개요

- 피해장애아동 임시 보호 및 지원 : 피해장애아동의 긴급분리를 통한 2차 피해예방
 - 피해장애아동에게 숙식제공
 - 쉼터 생활 및 필수품 지원
 -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등 의료지원 연계
- 상담지원
 - 학대로 인한 불안 및 우울 등 심리상태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
- 일상복귀 지원
 - 일상생활 훈련,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 등
 -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 및 서비스 연계 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등 교육지원
 - 문화체험, 체육활동, 여가활동 등 정서지원
 - 새로운 거주공간 연계지원
- 새로운 거주공간으로 정착 지원
 - 원가정복귀가 가능한 경우 원가정 복귀를 위한 지원
 - 기타 다른 거주공간이 필요한 경우 거주공간 연계
 - 지역사회 자원 및 서비스 연계
- 기타
 - 해당 쉼터 입소자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운영 가능

나. 사업 수행기관

□ 기관 현황

구분	소계	경기도피해장애아동 남아쉼터	경기도피해장애아동 여아쉼터
위탁기간	5년	2022. 11. 11.~2027. 11. 10.	
소재지	-	경기도 내 (비공개)	
운영인력	12명	6명(원장 1, 팀장 1, 생활복지사 4)	6명(팀장 1, 치료사 1, 생활복지사 4)
		※ 2022. 1명(원장) 채용, 2023. 전체 운영인력 채용	
예산액	816백만원	408백만원(국비 110, 도비 298)	408백만원(국비 110, 도비 298)

□ 주요현황 (2022년 기준)

- 2022. 4. - 보건복지부 3개 지자체(서울, 부산, 경기) 선정_각 남, 여 1개소
- 2022. 9. ~ 10. - 경기도 위·수탁 신청 및 선정
- 2022. 11. 11. - 경기도_위·수탁 계약 및 주택 선정(LH)
- 2022. 11. 11. ~ 12. 31. - 쉼터 개소 준비
- 2023. 01. - 쉼터 직원 채용 및 운영 준비(직원 교육 등)
- 2023. 02. 06. - 개소

□ 입소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학대 등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시·도, 시·군·구 등에 의하여 분리·인도 및 보호하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 ※ 입소도중 만18세에 도달하는 장애아동은 최대 입소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장애아동 쉼터에서 보호가능, 장애인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경로 등에 따라 입소 가능

II

2022 경기도 장애인 학대·차별 현황보고서

주요 현황

제1장 신고접수 분석

제2장 장애인학대 사례 분석

제3장 장애인차별 사례 분석

제4장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

제 1 장

신고접수 분석

경기도 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개소(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는 장애인학대 신고 전화 1644-8295를 통해 장애인학대 및 차별 신고를 받고 있음. 신고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면 '장애인학대 의심 사례'(이하 학대의심사례)로 분류하고 사례지원 절차에 따라 조사 및 사례판정 등을 실시함.

학대의심사례 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차별 사례, 장애인학대와 무관한 개인 간의 다툼이나 분쟁과 관련된 사례 등은 '일반사례'로 접수함.

1. 전체 신고접수_학대, 차별, 일반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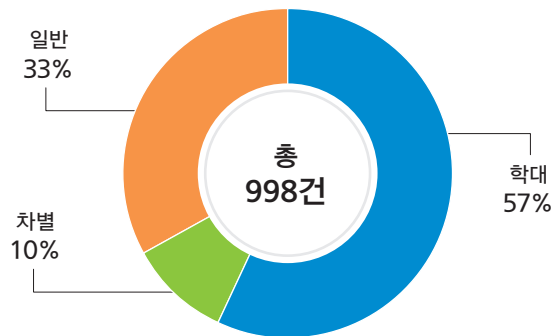
전체 신고 998건 중 학대의심사례 569건(57.0%), 일반사례 326건(32.7%), 차별 103건(10.3%) 순으로 전년도 신고접수 851건 대비 147건(17.3%) 증가하였다.

[표 1-1] 2022년 신고접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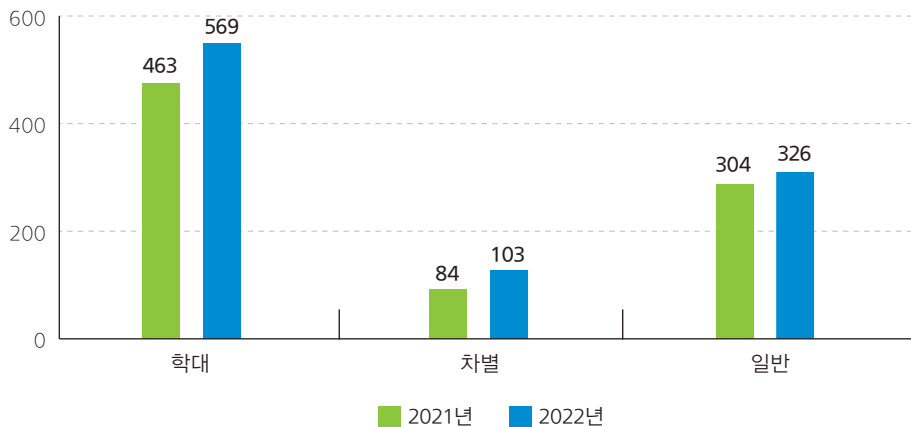
(단위 : 건, %)

구분	학대	차별	일반	계
계	569(57.0)	103(10.3)	326(32.7)	998(100)
경기 남부	314(54.2)	68(11.8)	197(34.0)	579(100)
경기 북부	255(60.9)	35(8.3)	129(30.8)	419(100)

[그래프 1-1] 2022년 신고접수 현황



[그래프 1-2] 신고접수 현황 비교 : 2021, 2022년



2. 월별 신고접수

월평균 신고접수 건은 83건이다. 학대의심사례는 월평균 47건, 일반사례는 월평균 27건, 차별 사례는 월평균 9건 이 접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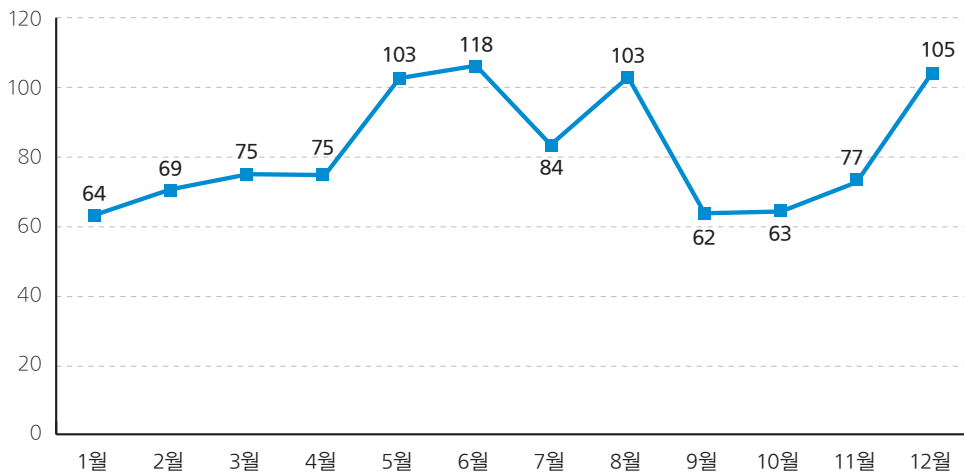
월별 신고접수 현황을 보면 6월이 118건, 12월이 105건, 5,8월이 103건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 월별 신고접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월 평균
학대	28	36	36	41	61	66	50	83	28	40	39	61	569	47
차별	7	9	7	6	11	12	11	5	9	6	11	9	103	9
일반	29	24	32	28	31	40	23	15	25	17	27	35	326	27
계	64	69	75	75	103	118	84	103	62	63	77	105	998	83

[그래프 1-3] 월별 신고접수 현황



3. 시·군별 신고접수

시·군별 전체 신고접수 현황은 수원시 71건(7.2%), 의정부시 62건(6.3%), 고양시 56건(5.6%) 순으로 신고가 많았다. 전체신고접수 중 학대신고접수 만을 살펴보면, 고양시 35건(6.2%)·용인시 35건(6.2%)·화성시 35건(6.2%), 의정부시 34건(6.0%), 수원시 33건(5.8%), 파주시 31건(5.4%) 순으로 많았다.

시·군별 신고접수 현황은 신고접수 당시 피해자의 실거주 지역을 확인한 것으로, 피해자가 신고접수한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된 것은 아니다. 즉, 피해자의 실거주 지역과 피해발생 지역은 상이하다.

기타(타 지역)의 경우, 경기도 외의 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신고접수하여 피해자를 지원하던 중 피해자가 거주지를 경기도로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일반 상담의 경우는 내담자가 거주지역을 밝히지 않고 전화상담만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내담자의 거주지역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기타(파악안됨)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1-3] 시·군별 신고접수 현황

(단위: 건, %)

시·군	학대		차별		일반		합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수원시	33	5.8%	10	9.7%	28	8.6%	71	7.2%
성남시	15	2.6%	4	3.9%	5	1.5%	24	2.4%
안양시	11	1.9%	2	1.9%	3	0.9%	16	1.6%
부천시	12	2.1%	5	4.9%	1	0.3%	18	1.8%
광명시	7	1.2%	0	0.0%	2	0.6%	9	0.9%
평택시	30	5.3%	5	4.9%	10	3.1%	45	4.5%
안산시	19	3.3%	3	2.9%	14	4.3%	36	3.6%
과천시	0	0.0%	0	0.0%	1	0.3%	1	0.1%
오산시	7	1.2%	2	1.9%	13	4.0%	22	2.2%
시흥시	9	1.6%	5	4.9%	8	2.5%	22	2.2%
군포시	6	1.1%	1	1.0%	1	0.3%	8	0.8%
의왕시	6	1.1%	1	1.0%	3	0.9%	10	1.0%
하남시	0	0.0%	0	0.0%	1	0.3%	1	0.1%
용인시	35	6.2%	3	2.9%	13	4.0%	51	5.1%
이천시	5	0.9%	1	1.0%	5	1.5%	11	1.1%
안성시	23	4.0%	4	3.9%	5	1.5%	32	3.2%
김포시	16	2.8%	3	2.9%	7	2.2%	26	2.6%
화성시	35	6.2%	4	3.9%	12	3.7%	51	5.1%
광주시	16	2.8%	1	1.0%	1	0.3%	18	1.8%
여주시	4	0.7%	0	0.0%	2	0.6%	6	0.6%
양평군	18	3.2%	2	1.9%	1	0.3%	21	2.1%
고양시	35	6.2%	6	5.8%	15	4.6%	56	5.6%
남양주시	23	4.0%	3	2.9%	10	3.1%	36	3.6%
파주시	31	5.4%	4	3.9%	13	4.0%	48	4.8%
의정부시	34	6.0%	7	6.8%	21	6.4%	62	6.3%
양주시	28	4.9%	3	2.9%	10	3.1%	41	4.1%
구리시	29	5.1%	0	0.0%	4	1.2%	33	3.3%
포천시	29	5.1%	3	2.9%	9	2.8%	41	4.1%
동두천시	17	3.0%	2	1.9%	4	1.2%	23	2.3%
가평군	11	1.9%	0	0.0%	5	1.5%	16	1.6%
연천군	7	1.2%	3	2.9%	3	0.9%	13	1.3%
기타(타 지역)	18	3.2%	16	15.5%	96	29.5%	130	13.0%
계	569	100.0%	103	100.0%	326	100.0%	998	100.0%

4. 신고접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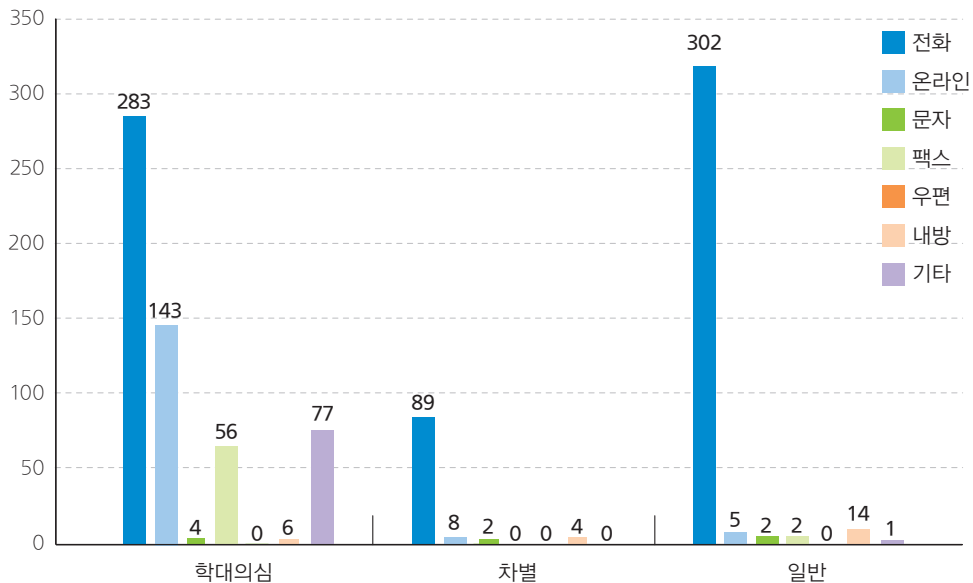
신고접수는 장애인학대 신고 전화 1644-8295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실 번호로 신고하는 전화신고,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내방 신고,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는 온라인 신고, 문자(카카오톡), 팩스, 우편의 방법과 상담원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례를 알게 되어 접수하는 인지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전화를 통한 신고가 가장 많이 이뤄지며, 이는 전체 신고의 67.6%인 674건이었다. 다음으로 온라인 신고가 156건(15.6%), 기타가 78건(7.8%), 팩스 신고가 58건(5.8%), 내방 신고가 24건(2.4%) 순으로 신고·접수되었다. ‘기타’ 접수방법은 사례지원과정에서 상담원이 추가 피해사실을 알게 되거나 외부회의 등에서 사례를 인지하는 경우, 언론에 보도되어 접수하는 사건 등이 해당된다.

[표 1-4] 신고접수 방법 현황

(단위 : 건, %)

구분	전화	온라인	문자	팩스	우편	내방	기타	계
학대 의심	283	143	4	56	0	6	77	569
차별	89	8	2	0	0	4	0	103
일반	302	5	2	2	0	14	1	326
계	674(67.6)	156(15.6)	8(0.8)	58(5.8)	0	24(2.4)	78(7.8)	998(100)

[그래프 1-4] 신고접수 방법 현황



5. 신고접수 경로

신고접수 경로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 내용이 전달되는 방식을 말하며, 신고가 접수되는 경로는 신고, 인지, 이관, 연계, 경찰통보가 있다. 인지란 언론보도 등 상담원이 사례를 알게 되어 접수하는 방법이다. 경찰통보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4(장애인학대 등의 통보)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사법경찰관리가 장애인 사망 및 상해 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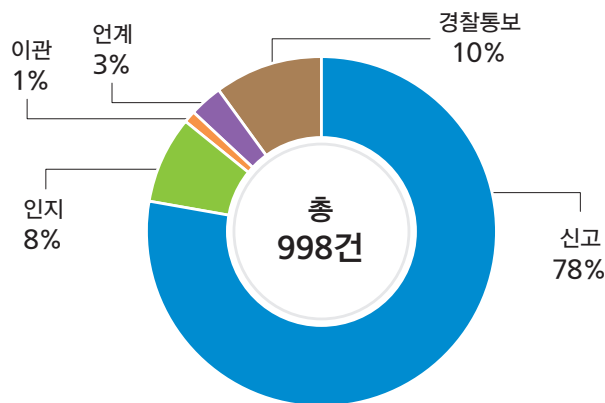
신고접수 경로를 보면 신고가 781건(78.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경찰통보 106건(10.6%), 인지 77건(7.7%), 연계 25건(2.5%), 이관 9건(0.9%) 순으로 나타났다

[표 1-5] 신고접수 경로 현황

(단위: 건, %)

구분	신고	인지	연계	이관	경찰통보	계
학대 의심	361	77	21	8	102	569
차별	98	0	2	1	2	103
일반	322	0	2	0	2	326
계	781(78.3)	77(7.7)	25(2.5)	9(0.9)	106(10.6)	998(100)

[그래프 1-5] 신고접수 경로 현황



제 2 장

장애인학대 사례 분석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 접수된 사례에 대하여 신고접수부터, 사례종결과 모니터링까지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 중 장애인 학대로 판정한 사례를 학대의 유형, 피해자의 특성, 행위자의 특성 등으로 심층 분석하였다.

1. 장애인학대 의심 사례지원 현황

1) 신고접수

[표 2-1] 장애인학대 의심 신고 건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신고 건수
계	569
경기 남부	314
경기 북부	255

2) 신고자 유형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를 알게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제1항). 또한 특정 직종에 한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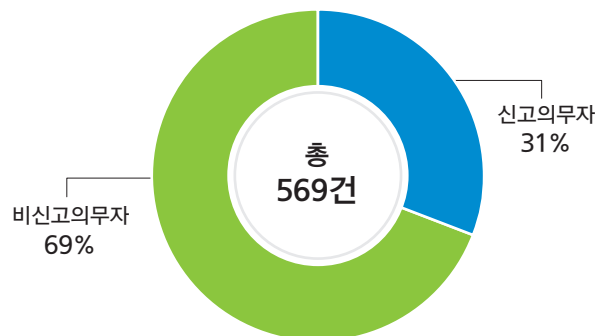
2022년 학대의심사례 569건 중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신고의무자)이 신고한 경우는 175건(30.8%), 신고의무가 없는 사람(이하 비신고의무자)의 신고는 394(69.2%)이었다.

[표 2-2] 신고자 유형

(단위 : 건)

구 분	학대 의심 사례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경기 남부	314	114	200
경기 북부	255	61	194
계	569	175	394

[그래프 2-1] 신고자 유형



2-1) 신고의무자 유형

신고의무자는 직무 특성상 피해장애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학대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 장애인학대는 피해장애인 본인이 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신고의무자가 장애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20년부터는 기관종사자를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와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로 나누어 집계하였다.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에 명시한 직군으로 나누었고,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는 교육기관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 노인 관련 기관 종사자, 기타 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 일반공무원, 경찰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로 나누었다.

신고의무자가 대부분 장애인과 가까운 거리에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안전을 돌보는 직무 특성이 있는 만큼 신고의무자에 의한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의무자에 의한 학대 행위 처벌과 이들에 대한 학대 예방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종사자 및 전담공무원	의료인 등	교육기관 종사자	상담소·보호시설의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 ■ 활동지원기관 ■ 정신건강복지센터 ■ 장기요양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인 ■ 의료기사 ■ 응급구조사 ■ 구급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학교의 교사 ■ 유치원 ■ 학원강사 ■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성매매 피해 ■ 가정폭력 ■ 한부모 ■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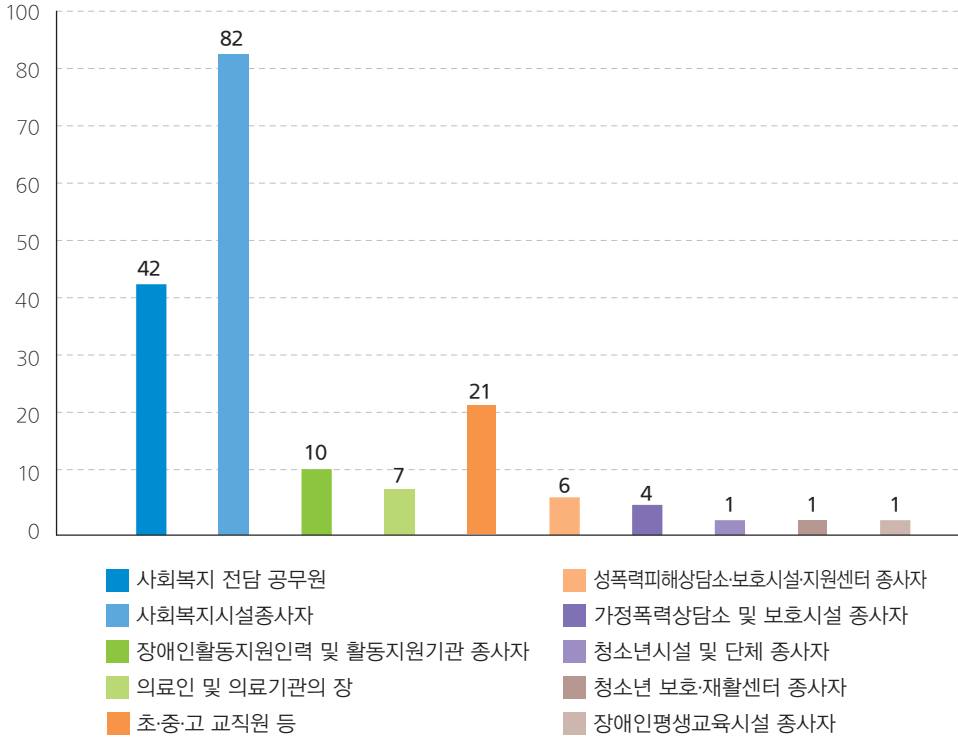
신고의무자에 의한 학대의심 신고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82건(46.8%)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42건(24.0%), 초·중·고 교직원 21건(12.0%),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10건(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3]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단위: 건, %)

신고의무자	계	남부	북부	비율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42	32	10	24.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82	58	24	46.8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10	6	4	5.7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7	4	3	4.0
의료기사	-	-	-	-
응급구조사	-	-	-	-
구급대의 대원	-	-	-	-
정신건강복지센터장과 종사자	-	-	-	-
보육 교직원	-	-	-	-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등	-	-	-	-
초·중·고 교직원 등	21	9	12	12.0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등	-	-	-	-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지원센터 종사자	6	3	3	3.4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	-	-	-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4	1	3	2.3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	-	-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	-	-
아동권리보장원 종사자	-	-	-	-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	-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	-	-	-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1	-	1	0.6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1	-	1	0.6
장기요양시설	-	-	-	-
서비스지원종합조사 담당자	-	-	-	-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	-	-	-
장기요양인정신청조사 담당자	-	-	-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	1	1	-	0.6
사회복무요원	-	-	-	-
계	175	114	61	100

[그래프 2-2]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2-2) 비신고의무자 유형

비신고의무자는 피해장애인과 관계에 따라 본인, 가족 및 친인척, 유관기관 종사자, 타인, 파악 안됨으로 분류한다.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학대의심 신고는 유관기관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175건(44.5%)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는 82건(20.8%),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신고는 80건(20.3%), 타인이 신고한 경우는 51건(12.9%), 신고자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는 6건(1.5%)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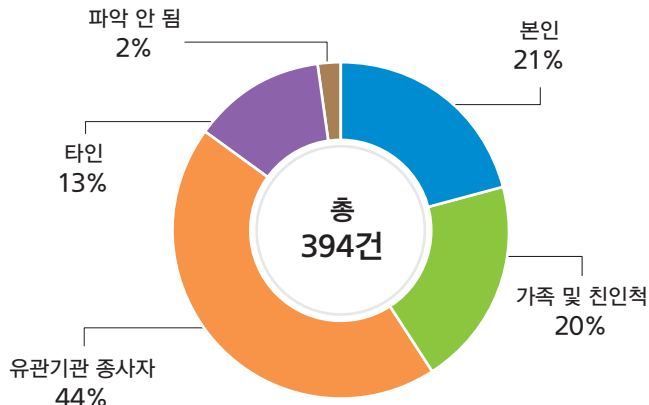
세부적으로 보면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가 신고한 경우가 93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 82건(20.8%), 타인 51건(12.9%) 등의 순이었다.

[표 2-4] 비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단위: 건, %)

비신고의무자		계	남부	북부	비율
본인		82	38	44	20,8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1	-	1	0,3
	부모	49	27	22	12,4
	자녀	3	2	1	0,8
	형제자매	15	9	6	3,8
	친인척	12	7	5	3,0
	소계	80	45	35	20,3
유관기관 종사자	일반공무원	17	9	8	4,3
	경찰공무원	42	11	31	10,7
	공공기관 종사자	3	1	2	0,8
	교육기관 종사자	2	2	-	0,5
	의료기관 종사자	4	4	-	1,0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93	48	45	23,6
	노인관련기관 종사자	3	2	1	0,8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3	3	-	0,8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8	3	5	2,0
	소계	175	83	92	44,5
	타인	51	29	22	12,9
파악 안됨	6	5	1	1,5	
계	394	200	194	100	

[그래프 2-3] 비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3) 학대 조사

장애인학대 조사란 신고 접수된 사례의 피해장애인에게 장애인학대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를 말한다. 조사 시에는 피해장애인에 대한 면담, 학대행위자 등 관련자에 대한 면담, 증거와 피해 관련 서류를 확인하며, 필요 시 피해장애인에 대해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는 모두 조사해야 하나 이미 경찰이나 유관 전문기관에서 조사 중이거나 조사를 완료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추가로 조사하는 것이 불필요한 때도 있다. 또한 피해장애인의 정보가 특정되지 않아 조사할 수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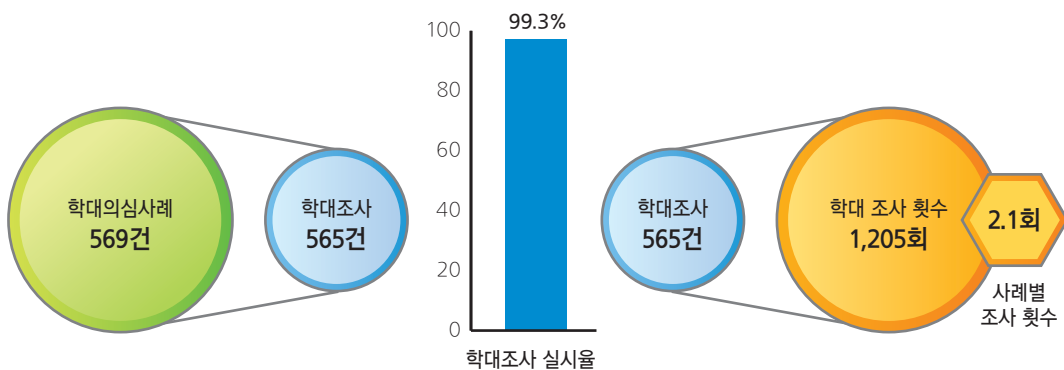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569건 중 565건을 조사하였으며 조사실시율은 99.3%로 전년도(451건 97.4%)와 비교했을 때 1.9% 증가하였다. 학대 조사 횟수는 1,205건으로 사례별 평균 2.1회 조사를 실시하였다. 경기남부 지역의 미실시 조사 4건은 타기관에서 조사를 완료한 사례로 별도의 조사가 필요치 않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표 2-5] 장애인학대의심 사례 조사 및 실시율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학대의심사례	학대 조사	학대 조사 실시율	학대 조사 횟수	사례별 조사 횟수
계	569	565	99.3	1,205	2.1
경기 남부	314	310	98.7	720	2.3
경기 북부	255	255	100	485	1.9

[그래프 2-4] 장애인학대의심 사례 조사 및 실시율 현황



4) 사례판정

학대 조사를 마친 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학대 사례 여부를 판정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의사결정 회의인 사례 회의에서 장애인학대 사례, 잠재위험사례, 비학대 사례 여부를 판정하고, 사례 회의에서 판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학대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장애인학대 사례는 학대 조사 결과 장애인에 대하여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사례를 말한다. 잠재위험사례는 학대 조사 결과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명확히 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사례로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학대 예방을 위해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례를 말한다. 비학대 사례는 장애인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를 말한다. 판정 전인 사례는 해당 연도에 신고접수 되었으나 학대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사례판정을 하지 않은 사례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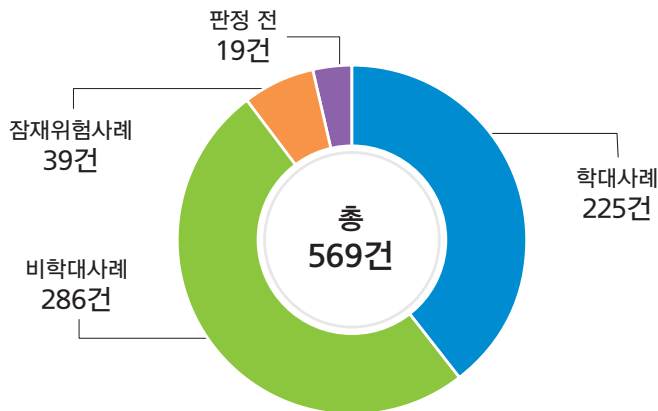
사례판정 결과, 학대의심사례 569건 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225건으로 전체의 39.5%를 차지했으며, 비학대 사례는 286건(50.3%), 잠재위험사례는 39건(6.9%), 판정 전인 사례는 19건(3.3%)이었다. 장애인학대 사례는 전년도(220건) 대비 5건(2.3%) 증가했으며, 잠재위험사례는 전년도(47건)대비 8건(17%) 감소, 비학대 사례는 전년도(194건) 대비 94건(48.5%) 증가하였다.

[표 2-6] 사례판정 현황

(단위 : 건, %)

구분	학대 사례	비학대 사례	잠재위험 사례	판정 전	계
계	225(39.5)	286(50.3)	39(6.9)	19(3.3)	569(100)
경기 남부	115	164	18	17	314
경기 북부	110	122	21	2	255

[그래프 2-5] 사례판정 현황



5) 상담 및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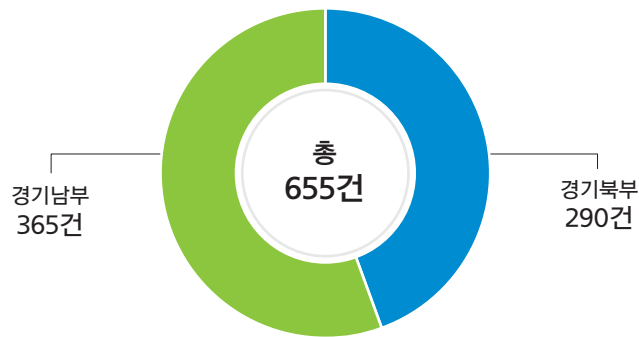
장애인학대 사례로 판정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지만, 당사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학대 사례인 경우에도 일부 개입하여 당사자를 지원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 및 지원은 당해 연도에 접수된 사례 이외에 전년도에 접수되어 종결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실시한다. 2022년 이전과 2022년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에(655건) 대해 5,140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였고, 사례별 평균 7.8회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졌다.

[표 2-7] 상담 및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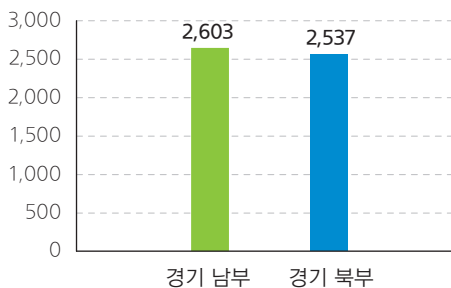
(단위 : 건)

구분	2022년 이전		2022년		계		사례별 상담 및 지원 횟수
	학대의심 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	학대의심 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	학대의심 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	
계	86	798	569	4,342	655	5,140	7.8
경기 남부	51	306	314	2,297	365	2,603	7.1
경기 북부	35	492	255	2,045	290	2,537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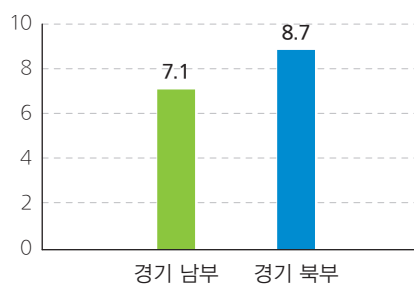
[그래프 2-6] 학대의심사례 현황



[그래프 2-7] 상담 및 지원 횟수



[그래프 2-8] 사례별 상담 및 지원 횟수



6) 사례종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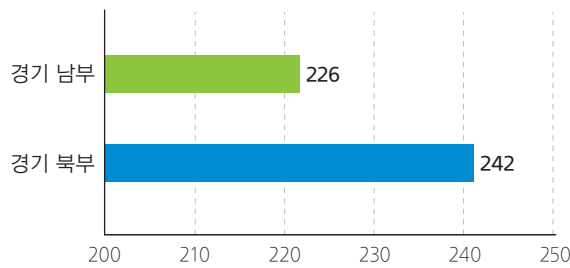
학대의심사례 569건 중 총 468건의 사례가 2022년 12월 31일로 종결되었으며 당해 연도 사례종결률은 82.2%로 나타났다.

[표 2-8] 종결사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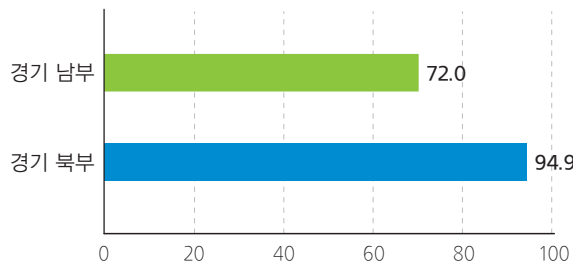
(단위: 건, %)

구분	학대의심사례	종결사례	당해 연도 사례종결률
계	569	468	82.2
경기 남부	314	226	72.0
경기 북부	255	242	94.9

[그래프 2-9] 종결사례 현황



[그래프 2-10] 당해 연도 사례종결률 현황



7) 모니터링

학대 사례에 대해 지원이 완료된 이후 일정 기간 재학대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사후 모니터링 기간에 최소 1회 이상 피해장애인과 직접 소통하여 안전과 재학대 여부를 확인한다. 사례에 따라 예외적으로 피해장애인이 명확하게 더 이상의 연락을 원하지 않거나 사망, 수감 등의 사유로 연락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지역으로 사례가 이관된 경우에는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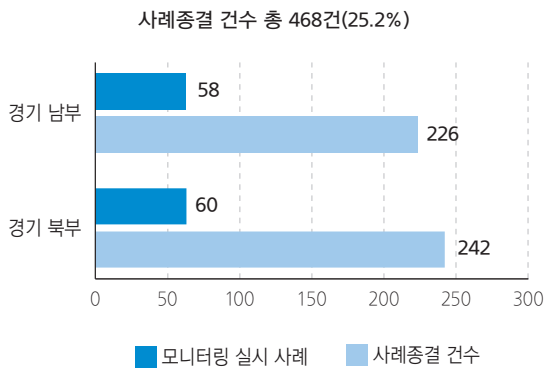
종결된 학대 사례 468건 중 118건(25.2%)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 하였으며, 사후 모니터링은 347회 실시하였다.

[표 2-9] 모니터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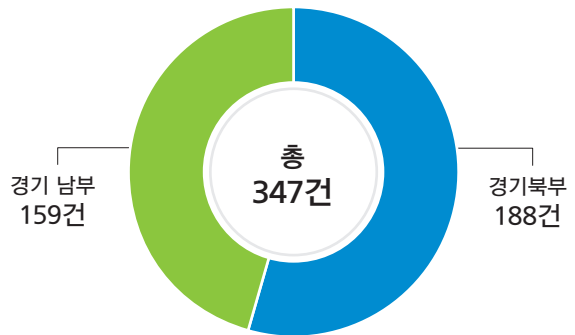
(단위 : 건, %)

구분	사례종결 건수	모니터링 실시 사례	비율	모니터링 실시 횟수	모니터링 지원 비율
계	468	118	25.2	347	2.9
경기 남부	226	58	25.7	159	2.7
경기 북부	242	60	24.8	188	3.1

[그래프 2-11] 모니터링 실시 현황



[그래프 2-12] 모니터링 지원 현황



2. 장애인학대 사례 분석

장애인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으로 장애인학대를 분류하고 있다. 기존 학대유형 외 피해장애인이 한 사건에서 여러 유형의 학대 피해를 경험한 경우 이를 '중복 학대'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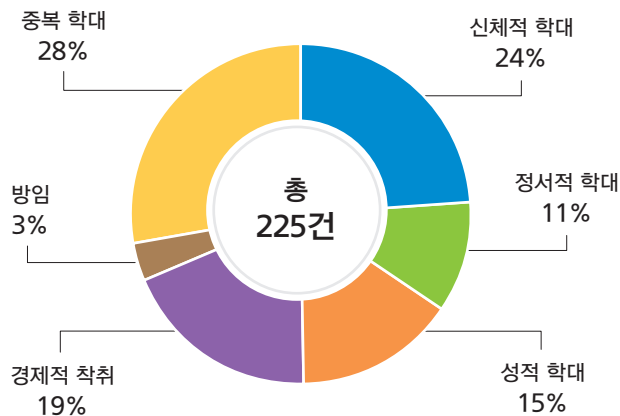
학대로 판정된 사례 225건 중 중복 학대 62건(27.6%)이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학대 54건(24.0%), 경제적 착취 43건(19.1%), 성적 학대 34건 (15.1%) 순으로 판정되었다.

[표 2-10] 학대 사례 현황

(단위: 건, %)

유형	남부	북부	계	비율
신체적 학대	38	16	54	24.0
정서적 학대	11	13	24	10.7
성적 학대	23	11	34	15.1
경제적 착취	18	25	43	19.1
유기	0	0	0	0
방임	3	5	8	3.5
중복 학대	22	40	62	27.6
계	115	110	225	100

[그래프 2-13] 장애인학대 유형 분석



1) 피해장애인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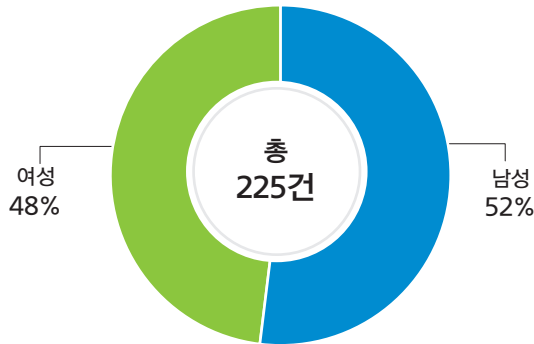
장애인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225건이며, 피해자 중 남성은 117명(52%)로 여성 108명(48%)보다 4% 높게 나타났다.

[표 2-11] 피해장애인 성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남성	여성	계
계	117(52%)	108(48%)	225(100%)
경기 남부	56	59	115
경기 북부	61	49	110

[그래프 2-14] 피해장애인 성별 현황



2) 피해장애인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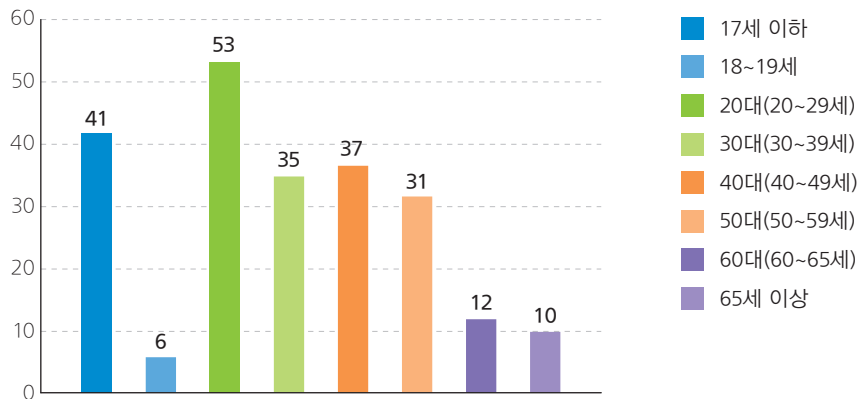
피해장애인의 연령은 20대가 53명(23.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7세 이하 41명(18.2%), 40대 37명(16.4%), 30대 35명(15.6%), 50대 31명(13.8%), 60대 12명(5.3%), 65세 이상 10명(4.4%), 18~19세 6명(2.7%)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2] 피해장애인 연령 현황

(단위 : 명, %)

연령	남부	북부	계	비율
17세 이하	23	18	41	18.2
18~19세	3	3	6	2.7
20대(20~29세)	32	21	53	23.6
30대(30~39세)	20	15	35	15.6
40대(40~49세)	22	15	37	16.4
50대(50~59세)	7	24	31	13.8
60대(60~65세)	2	10	12	5.3
65세 이상	6	4	10	4.4
계	115	110	225	100

[그래프 2-15] 피해장애인 연령 현황





3)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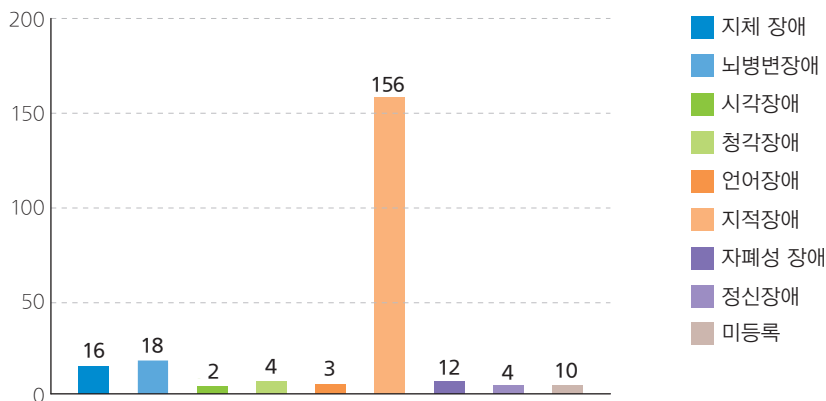
피해장애인의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가 156건(69.3%)으로 가장 많았으며, 뇌병변장애 18건(8.0%), 지체장애 16건(7.1%), 자폐성 장애 12건(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장애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는 168건(74.6%)이었고, 정신장애를 포함하는 정신적 장애는 172건(76.4%)으로 나타났다.

[표 2-13]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 현황

(단위: 건, %)

장애 유형	건수			비율
	계	남부	북부	
지체 장애	16	7	9	7.1
뇌병변장애	18	10	8	8.0
시각장애	2	1	1	0.9
청각장애	4	2	2	1.8
언어장애	3	2	1	1.3
지적장애	156	77	79	69.3
자폐성 장애	12	9	3	5.3
정신장애	4	2	2	1.8
신장 장애	0	0	0	0
심장 장애	0	0	0	0
호흡기 장애	0	0	0	0
간 장애	0	0	0	0
안면장애	0	0	0	0
장루 · 요루장애	0	0	0	0
뇌전증 장애	0	0	0	0
미등록	10	5	5	4.5
계	225	115	110	100

[그래프 2-16]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 현황



4) 피해장애인 장애 정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부터 기존의 '장애등급'이 '장애 정도'로 개편되었다. 기존 1~3등급의 장애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으로, 4~6등급의 장애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으로 변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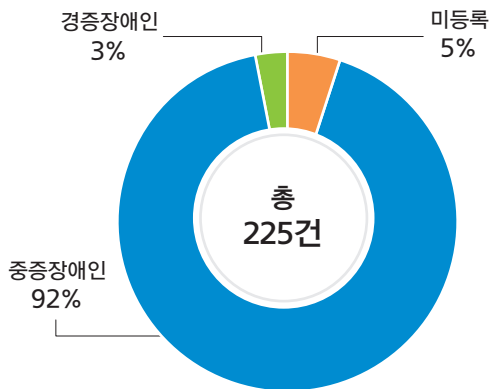
피해장애인 중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215건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은 208건(92.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은 7건(3.1%)이었다.

[표 2-14] 피해장애인 장애 정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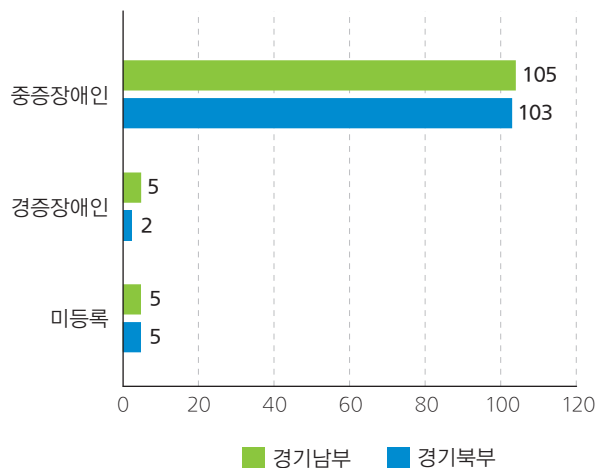
(단위 : 건, %)

장애 유형	남부	북부	계	비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5	103	208	92.4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	2	7	3.1
미등록	5	5	10	4.5
계	115	110	225	100

[그래프 2-17] 피해장애인 장애 정도 현황_1



[그래프 2-18] 피해장애인 장애 정도 현황_2



5) 피해장애인 거주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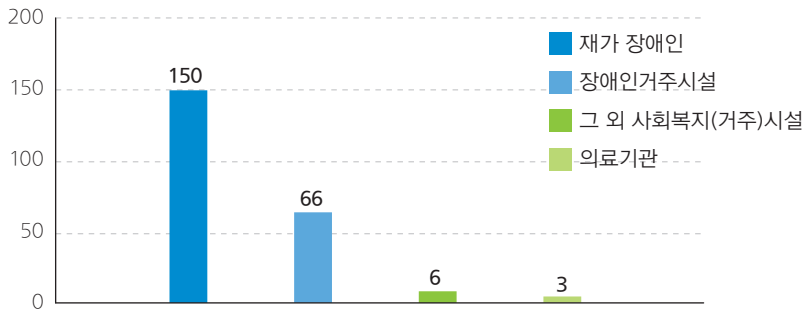
신고 당시 피해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은 재가와 시설로 분류된다. 시설은 다수가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관리자가 있는 주거 형태로 사회복지시설 중 거주시설 혹은 생활시설, 미신고시설 등이 해당한다. 이 외에는 모두 재가로 분류된다. 신고 당시 피해장애인이 재가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150건(66.7%)이었고,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66건(29.3%), 그 외 사회복지(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6건(2.7%), 의료기관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3건(1.3%)이었다.

[표 2-15] 피해장애인 거주 형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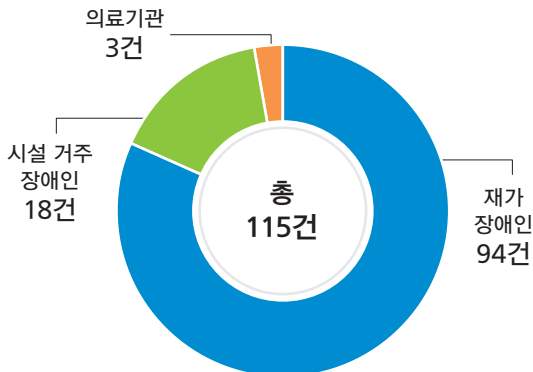
(단위: 건, %)

거주 형태	남부	북부	계	비율
재가 장애인	94	56	150	66.7
장애인거주시설	17	49	66	29.3
그 외 사회복지(거주)시설	1	5	6	2.7
의료기관	3	0	3	1.3
계	115	110	22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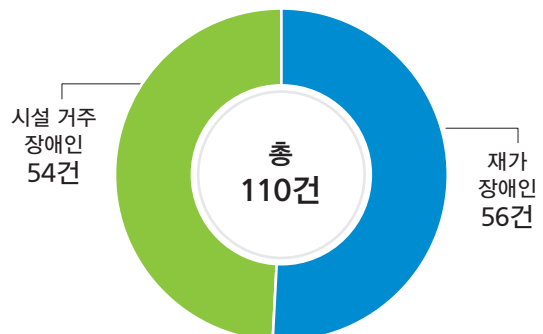
[그래프 2-19] 거주 형태 현황



[그래프 2-20] 거주 형태_남부



[그래프 2-21] 거주 형태_북부



6)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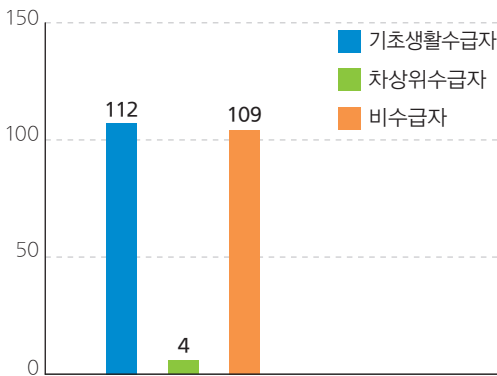
피해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를 살펴보면 피해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112건(49.8%),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109건(48.4%), 차상위수급자인 경우는 4건(1.8%)로 나타났다.

[표 2-16]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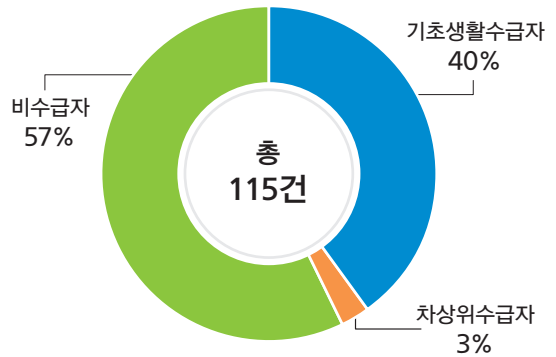
(단위 : 건, %)

구분	계	남부	북부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112	46	66	49.8
차상위수급자	4	4	0	1.8
비수급자	109	65	44	48.4
계	225	115	11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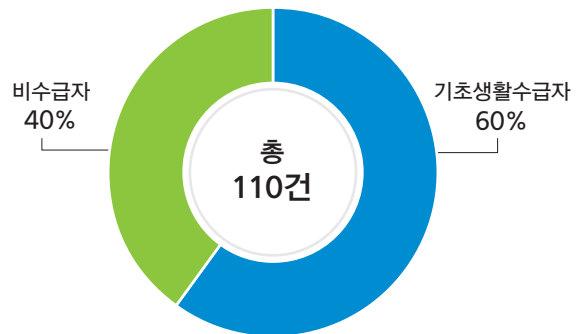
[그래프 2-22]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 수급자 여부 현황



[그래프 2-23] 수급자 여부_남부



[그래프 2-24] 수급자 여부_북부



7) 학대행위자 성별

장애인학대의 행위자는 하나의 사례에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하나의 사례에 행위자가 다수이더라도 주 행위자 1명에 대한 정보만 통계로 집계하고 있어 본 보고서의 피해장애인 수와 학대행위자 수는 동일하게 225명이다.

장애인학대 사례 225건의 학대행위자 성별을 보면 남성이 155명(68.9%), 여성이 70명(31.1%)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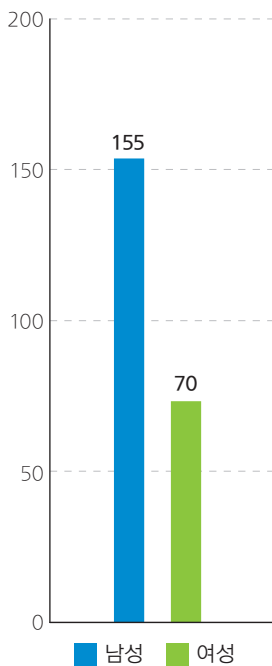
학대행위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 2.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7] 학대행위자 성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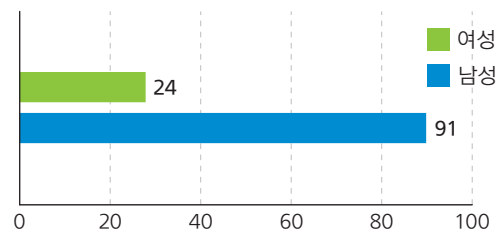
(단위 : 건, %)

성 별	건수			비율
	계	남부	북부	
남 성	155	91	64	68.9
여 성	70	24	46	31.1
계	225	115	11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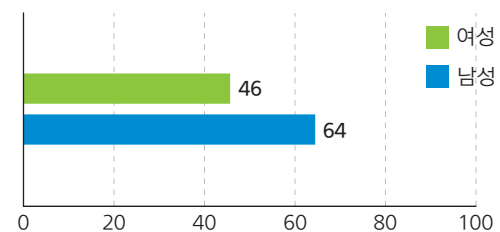
[그래프 2-25] 학대행위자 성별 현황



[그래프 2-26] 학대행위자 성별_남부



[그래프 2-27] 학대행위자 성별_북부



8) 학대행위자 연령

학대행위자의 연령은 50대 77명(34.2%), 30대 36명(16.0%), 40대 34명(15.1%)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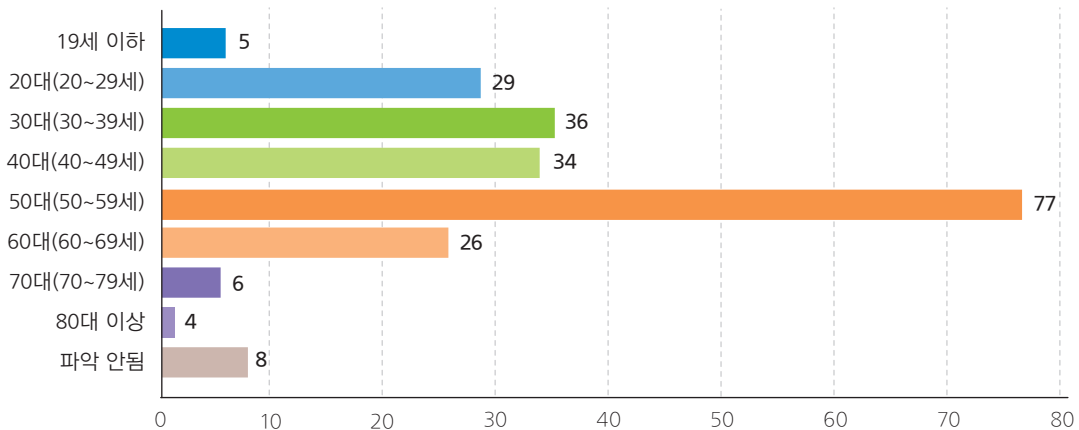
[표 2-18] 학대행위자 연령 현황

(단위: 건, %)

연령	남부	북부	계	비율
19세 이하	3	2	5	2.2
20대(20~29세)	22	7	29	12.9
30대(30~39세)	15	21	36	16.0
40대(40~49세)	23	11	34	15.1
50대(50~59세)	30	47	77	34.2
60대(60~69세)	10	16	26	11.5
70대(70~79세)	4	2	6	2.7
80대 이상	2	2	4	1.8
파악 안됨	6	2	8	3.6
계	115	110	225	100

학대행위자의 연령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는 8건(3.6%)로 피해장애인이 학대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프 2-28] 학대행위자 연령 현황





9)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는 가족 및 친인척, 타인,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 기관 종사자, 본인, 파악 안됨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족 및 친인척에는 배우자, 부, 모, 조부모, 자녀,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그 외 친척으로 나뉜다. 타인에는 동거인, 이웃,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고용주, 모르는 사람이 포함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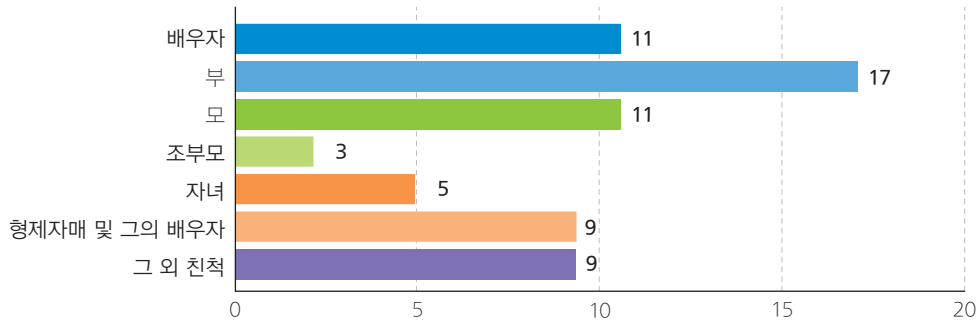
장애인학대 사례 225건 중 타인에 의한 학대가 79건(35.1%)으로 가장 많았다. 행위자가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인 경우는 77건(34.2%), 가족 및 친인척은 65건(28.9%),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는 4건(1.8%)으로 나 타났다.

[표 2-19]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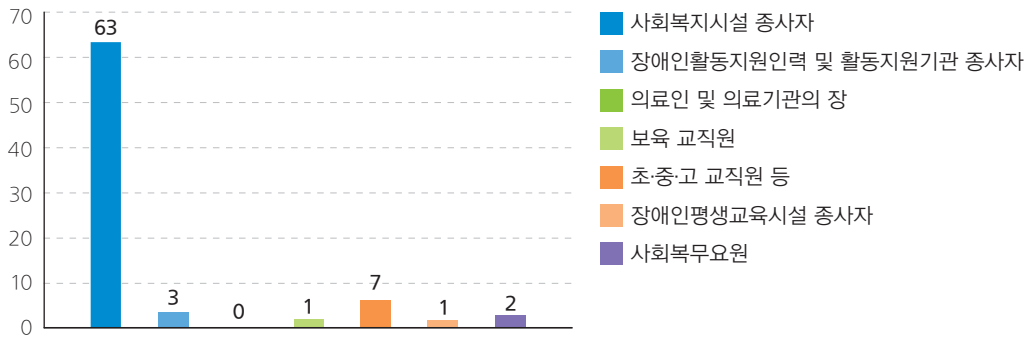
(단위: 건, %)

관계		남부	북부	계	비율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6	5	11	4.9
	부	14	3	17	7.5
	모	7	4	11	4.9
	조부모	1	2	3	1.4
	자녀	4	1	5	2.2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5	4	9	4.0
	그 외 친척	6	3	9	4.0
	소계	43	22	65	28.9
타인	동거인	3	1	4	1.8
	이웃	2	1	3	1.4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26	17	43	19.1
	고용주	8	2	10	4.4
	모르는 사람	6	13	19	8.4
	소계	45	34	79	35.1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4	49	63	28.0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2	1	3	1.4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0	0	0	0
	보육 교직원	1	0	1	0.4
	초·중·고 교직원 등	4	3	7	3.1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	0	1	1	0.4
	사회복무요원	2	0	2	0.9
소계	23	54	77	34.2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0	0	0	0
	의료기관 종사자	0	0	0	0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0	0	0	0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	1	0	1	0.4
	노인 관련 기관 종사자	0	0	0	0
	기타 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	3	0	3	1.4
	소계	4	0	4	1.8
분인	0	0	0	0	
파악 안됨	0	0	0	0	
계	115	110	22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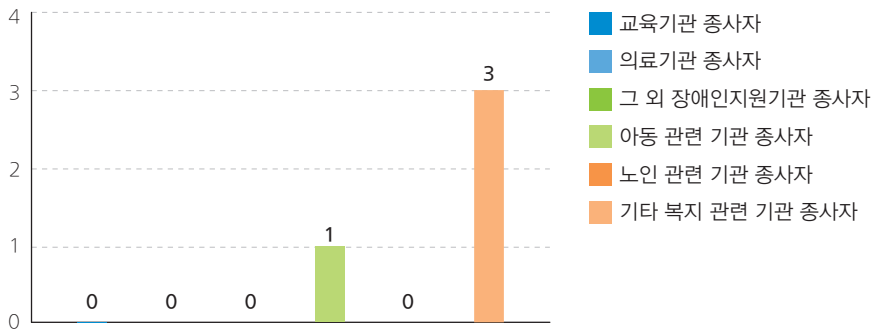
[그래프 2-29]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_가족 및 친인척



[그래프 2-30]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_신고의무자



[그래프 2-31]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_비신고의무자



10)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 동거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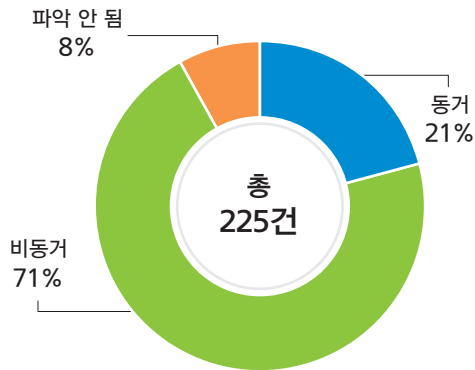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동거 여부를 보면 장애인학대 사례 225건 중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이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159건(70.7%)이었으며, 동거하는 경우가 47건(20.9%), 파악되지 않은 경우가 19건(8.4%)으로 확인되었다.

[표 2-20]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동거 여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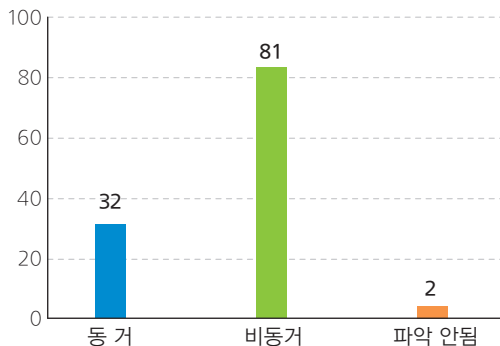
(단위 : 건, %)

구분	남부	북부	계	비율
동거	32	15	47	20.9
비동거	81	78	159	70.7
파악 안됨	2	17	19	8.4
계	115	110	22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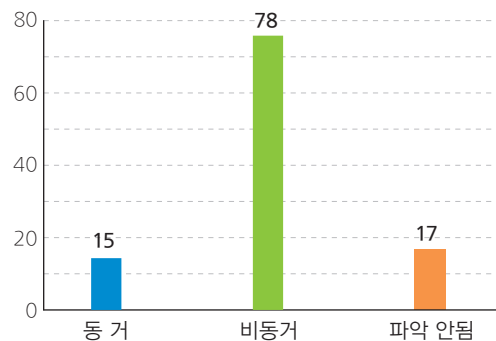
[그래프 2-32]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동거 여부 현황



[그래프 2-33] 동거 여부_남부



[그래프 2-34] 동거 여부_북부



11) 학대행위자 신고의무자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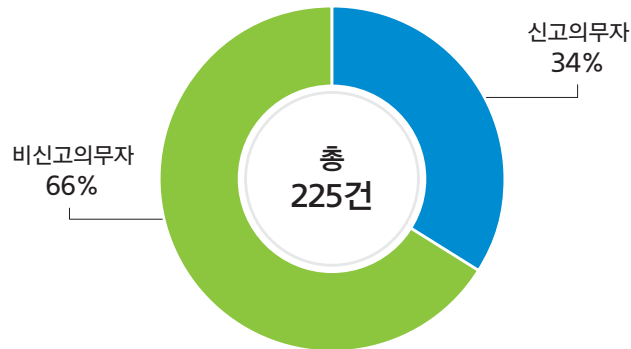
학대행위자의 신고의무자 여부에서는 전체 225건 중 77건(34.2%)이 신고의무자이고, 비신고의무자는 148건(65.8%)으로 비신고의무자의 학대 행위 비중이 약 2배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21] 학대행위자 신고의무자 여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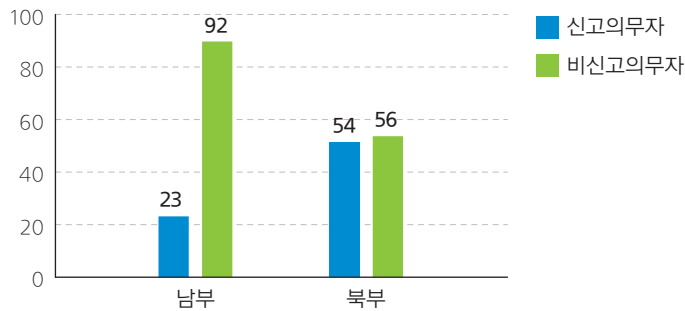
(단위: 건, %)

연령	남부	북부	계	비율
신고의무자	23	54	77	34.2
비신고의무자	92	56	148	65.8
계	115	110	225	100

[그래프 2-35] 신고의무자 여부 현황_1



[그래프 2-36] 신고의무자 여부 현황_2



12) 학대 발생 장소

장애인학대 발생 장소는 학대유형과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해장애인 거주지, 학대행위자 거주지, 기타 거주지, 직장(일하는 곳), 교육기관, 일반 의료기관, 정신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보호시설(쉼터),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정신요양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 관련 시설, 기타 복지 관련 시설, 종교시설, 미신고시설, 온라인, 상업시설, 기타 등으로 분류한다.

발생한 장소를 살펴보면 피해장애인의 거주지가 70건(31.2%)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거주시설 63건(28.0%), 학대행위자의 거주지 24건(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2] 학대 발생 장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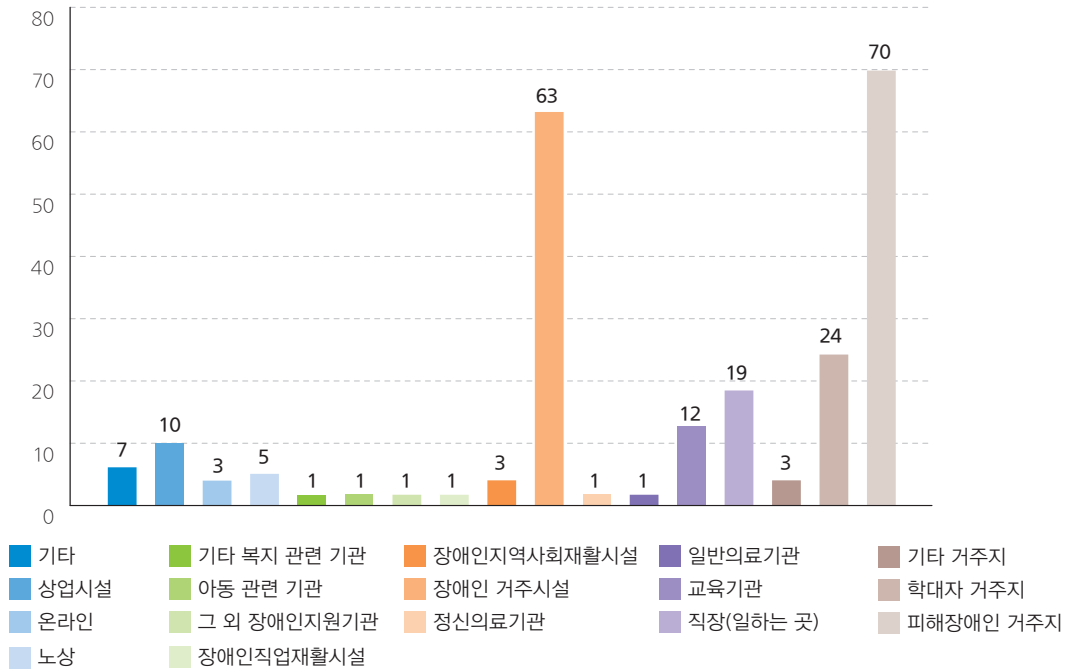
(단위 : 건, %)

발생 장소	남부	북부	계	비율	
피해장애인 거주지	37	33	70	31.2	
학대행위자 거주지	18	6	24	10.7	
기타 거주지	0	3	3	1.4	
직장(일하는 곳)	14	5	19	8.4	
교육기관	7	5	12	5.4	
일반 의료기관	1	0	1	0.4	
정신 의료기관	1	0	1	0.4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15	48	63	28.0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2	1	3	1.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0	1	1	0.4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0	0	0	0
	장애인의료재활시설	0	0	0	0
보호시설(쉼터)	0	0	0	0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0	1	1	0.4	
정신요양시설	0	0	0	0	
정신재활시설	0	0	0	0	
아동 관련 기관	0	1	1	0.4	
노인 관련 기관	0	0	0	0	
기타 복지 관련 기관	0	1	1	0.4	



발생 장소	남부	북부	계	비율
종교시설	0	0	0	0
미신고시설	0	0	0	0
노상	5	0	5	2.2
온라인	3	0	3	1.4
상업시설	7	3	10	4.4
기타	5	2	7	3.1
파악 안됨	0	0	0	0
계	115	110	225	100

[그래프 2-37] 학대 발생 장소



3. 학대피해 응급분리 후 피해장애인 지원현황 (피해장애인쉼터)

1) 피해장애인쉼터 입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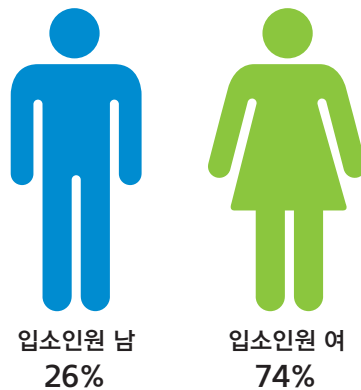
2022년 12월 31일 기준 경기도 내 피해장애인쉼터를 이용(입소)한 인원은 총 43명(누적)이었으며, 그 중 32명(74.4%)이 여성, 11명(25.6%)이 남성이었다.

[표 2-23] 피해장애인쉼터 입소 현황

(단위 : 명)

구분	정원		입소인원		합계	비고
	남	여	남	여		
남부	4	4	11	13	24	남아 2명, 여아 4명 포함
북부	-	8	-	19	19	
계	4	12	11	32	43	

[그래프 2-38] 피해장애인쉼터 입소 현황





2) 피해장애인쉼터 퇴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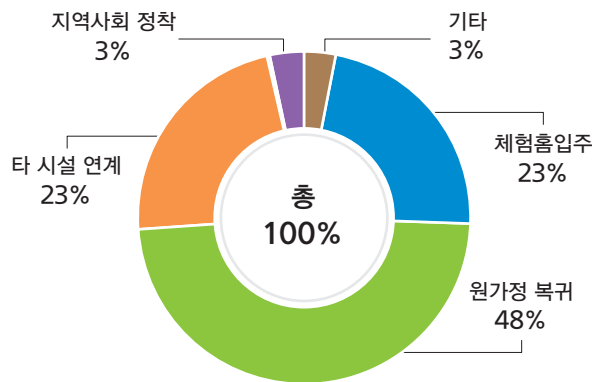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입소인원 43명 중 31명(72.1%)이 퇴소하였다. 퇴소 사유로는 원가정 복귀가 15명(48.4%), 체험홈 입주 7명(22.6%), 타 시설 연계 7명(22.6%), 지역사회정착 1명(3.2%), 기타가 1명(3.2%)으로 나타났다. 타 시설 연계의 경우 장애아동보호시설, 공동생활 가정과 장기거주가 가능한 시설 등으로 연계하였다. 기타는 피해장애인의 갑작스러운 뇌경색 발병으로 인해 장기적 의료지원이 가능한 재활병원에 입원한 경우를 말한다.

[표 2-24] 피해장애인쉼터 퇴소 현황

(단위 : 명)

구분	입소 인원	퇴소 인원	퇴소 사유				
			지역사회 정착	체험홈 입주	원 가정 복귀	타 시설 연계	기타
남부	24	18	1	7	7	2	1
북부	19	13	-	-	8	5	-
계	43	31	1	7	15	7	1

[그래프 2-39] 피해장애인쉼터 퇴소 현황



3) 피해장애인쉼터 평균 이용기간 현황

피해장애인의 입소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최대 9개월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지자체 승인을 득하여 최대 입소기간 1년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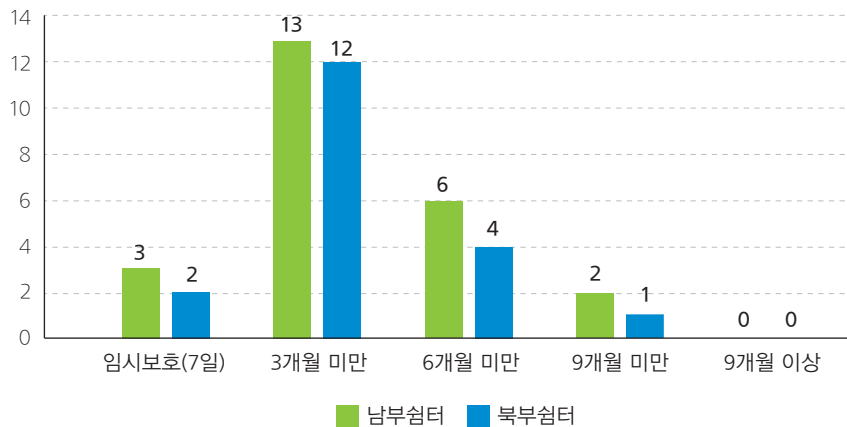
피해장애인쉼터 평균 이용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일주일이상~3개월 미만 이 25명(5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6개월 미만 10명(23%), 일시보호(7일 미만) 5명(16%), 9개월 미만 3명(9%)로 나타났다. 일시보호는 이용 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표 2-25] 피해장애인쉼터 평균 이용기간 현황

(단위 : 명)

구분	평균 이용기간(개월)	2022년도 이용기간 별 현황					합계
	산출내역	일시 보호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남부	2.1개월 1,560일/실인원24명/30일	3	13	6	2	0	24
북부	2.3개월 1,301일/실인원19명/30일	2	12	4	1	0	19
계	2.2개월 (평균 66.5일)	5	25	10	3	0	43

[그래프 2-40] 피해장애인쉼터 평균 이용기간 현황



4) 피해장애인 특성

4-1)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연령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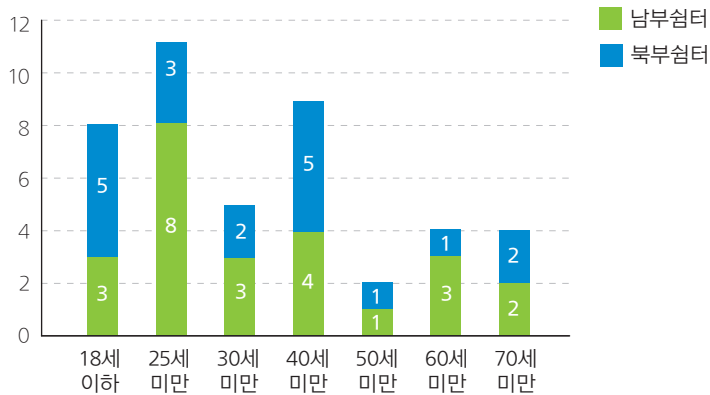
피해장애인의 연령을 살펴보면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19세~25세 미만이 11명(25.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1세~40세 미만 9명(21.1%), 18세 미만 8명(18.6%), 26세~30세 미만 5명(11.6%), 51세~60세 미만, 60세 이상 각각 4명(9.3%), 41세~50세 미만 2명(4.6%)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6]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연령 현황

(단위 : 명)

구분	18세 이하	25세 미만	30세 미만	40세 미만	50세 미만	60세 미만	60세 이상	합계
남부	3	8	3	4	1	3	2	24
북부	5	3	2	5	1	1	2	19
계	8	11	5	9	2	4	4	43

[그래프 2-41]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연령 현황



4-2)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장애유형

경기도 내 피해장애인 쉼터를 이용한 43명 중 발달장애가 전체 장애유형 중 33명(76.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체장애 4명(9.3%),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 장애 3명(7.0%), 시각과 청각, 정신장애가 각각 1명(각 2.3%)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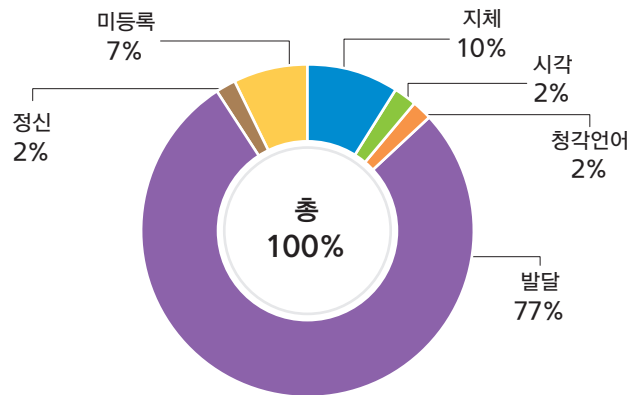
이들 중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복장애가 4명(9.3%)이며, 미등록 장애인의 경우 쉼터에 입소 후 장애진단 및 장애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표 2-27]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장애유형

(단위 : 명)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발달	정신	내부	미등록	합계
남부	2	0	1	1	19	1	0	0	24
북부	2	0	0	0	14	0	0	3	19
계	4	0	1	1	33	1	0	3	43

[그래프 2-42]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장애유형



4-3)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학대유형

「장애인복지법」제2조제3항 장애인학대에 대한 정의를 기초로 하여 입소시 학대의심유형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두 가지 이상 학대피해가 나타나는 유형을 중복학대라는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입소자 학대유형을 분석한 결과 학대피해자 43명 중 신체적 학대 10명(23.3%), 성적 학대 9명(20.9%), 중복학대 16명(37.2%), 정서적 학대 5명(11.6%), 경제적 학대 0명, 유기 및 방임 3명(7.0%)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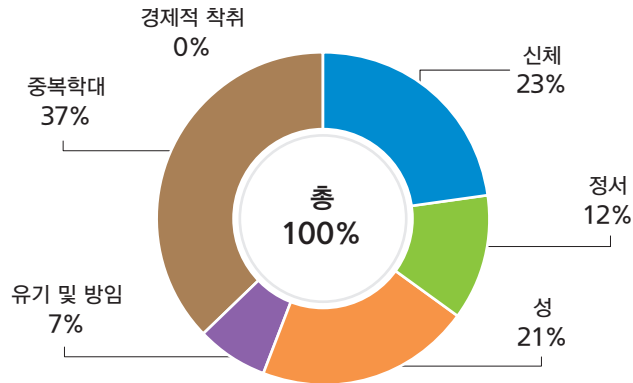
[표 2-28]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학대유형

(단위 : 명)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및 방임	중복 학대	합계
남부	8	-	4	-	3	9	24
북부	2	5	5	-	-	7	19
계	10	5	9	0	3	16	43

※ 해당 데이터는 피해장애인 쉼터 입소 시 학대의심유형을 기준으로 작성됨

[그래프 2-43]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자 학대유형



제 3 장

장애인차별 사례 분석

장애인학대 의심 사례 외에 장애인차별, 정보 문의, 불만 또는 민원 등의 일반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이하는 경기도에 소재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개소에 접수된 신고 건수 중 장애인차별 사례를 분석한 결과이다.

1. 장애인차별 신고접수 현황

신고 접수된 장애인차별 사례는 103건(24.0%)이며, 장애인차별을 제외한 일반사례는 326건(76.0%)이었다.

[표 3-1] 장애인차별 신고접수 현황

(단위: 건, %)

구분	남부	북부	계	비율
일반	197	129	326	76.0
차별	68	35	103	24.0
계	265	164	429	100

2. 장애인차별 상담 및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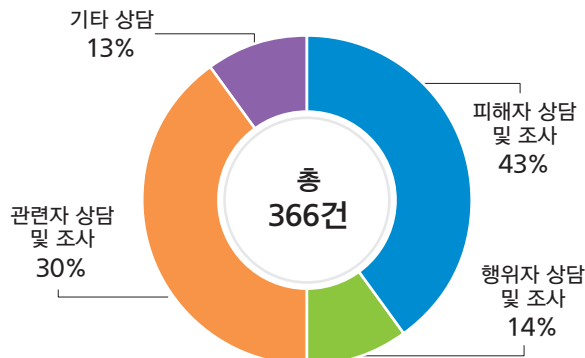
접수된 103건에 대해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행위자, 관련자를 대상으로 조사 및 상담을 실시한 현황이다. 전체 상담 및 조사는 366건 이뤄졌으며, 이 중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조사는 158건(43.2%), 관련자 110건(30.1%), 행위자 51건(13.9%)이 이뤄졌다.

[표 3-2] 장애인차별 상담 및 조사 현황

(단위: 건, %)

구분	남부	북부	계	비율
피해자 상담 및 조사	71	87	158	43.2
행위자 상담 및 조사	33	18	51	13.9
관련자 상담 및 조사	57	53	110	30.1
기타 상담	22	25	47	12.8
계	183	183	366	100

[그래프 3-1] 장애인차별 상담 및 조사 현황



3. 장애인차별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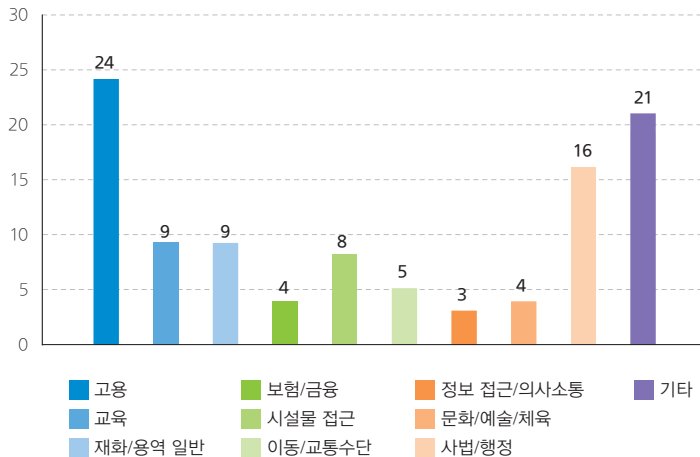
접수된 103건 중 고용차별이 24건(23.3%)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21건(20.4%), 사법/행정 16건(15.5%), 교육, 재화/용역 일반 9건(8.7%), 시설물 접근 8건(7.8%), 이동/교통수단 5건(4.9%)의 순서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영역은 다른 장애인차별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은 차별로 모·부성권,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장애 여성, 장애아동 등과 관련된 내용을 말한다.

[표 3-3] 장애인차별 유형 현황

(단위 : 건, %)

구분	남부	북부	계	비율
고용	19	5	24	23.3
교육	9	0	9	8.7
재화/용역 일반	6	3	9	8.7
보험/금융	1	3	4	3.9
시설물 접근	5	3	8	7.8
이동/교통수단	1	4	5	4.9
정보 접근/의사소통	2	1	3	2.9
문화/예술/체육	3	1	4	3.9
사법/행정	2	14	16	15.5
기타	20	1	21	20.4
계	68	35	103	100

[그래프 3-2] 장애인차별 유형 현황



4. 장애인차별 지원(처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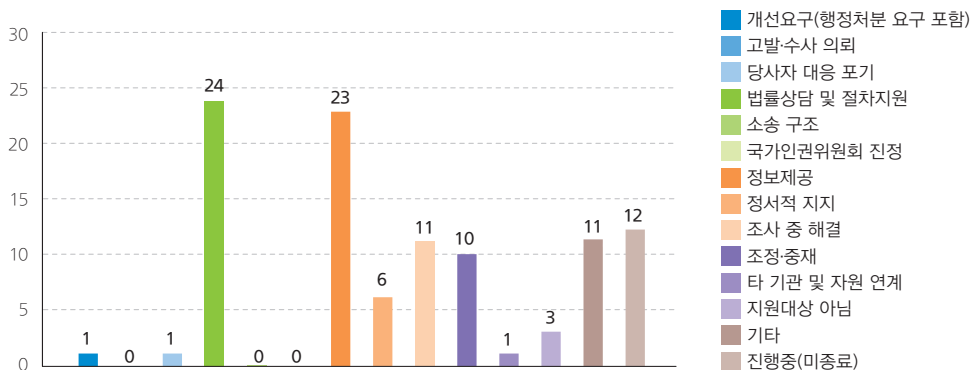
접수된 103건에 대한 지원 및 처리는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 24건(23.3%), 정보제공 23건(22.3%), 진행 중 12건(11.6%), 조사 중 해결과 기타 11건(10.7%), 조정·중재 10건(9.7%)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3-4] 장애인차별 처리결과 현황

(단위 : 건, %)

처리결과	남부	북부	계	비율
개선 요구(행정처분 요구 포함)	0	1	1	1.0
고발 · 수사 의뢰	0	0	0	0
당사자 대응포기	1	0	1	1.0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	12	12	24	23.3
소송구조	0	0	0	0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0	0	0	0
정보제공	14	9	23	22.3
정서적 지지	5	1	6	5.8
조사 중 해결	9	2	11	10.7
조정 · 중재	7	3	10	9.7
타 기관 및 자원 연계	0	1	1	1.0
지원 대상 아님	3	0	3	2.9
기타	9	2	11	10.7
진행 중(미종료)	8	4	12	11.6
계	68	35	103	100

[그래프 3-3] 장애인차별 처리결과 현황



제 4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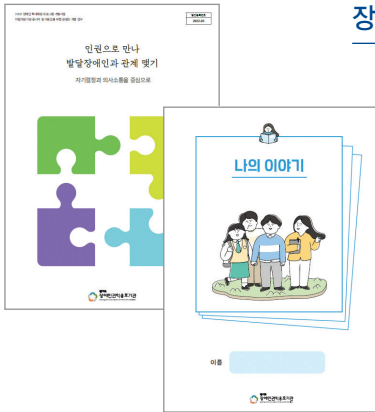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

「장애인복지법」 및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장애인 학대 및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경기도 내 장애인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하였음.

1.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사업

장애인 학대·차별 예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 및 개발하고 있다. 2022년에는 장애인자립지원기관 종사자 및 이용인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2종과 경기도민 대상 장애인 차별 사례 중심의 안내서 1종을 개발하였다.

장애인자립지원기관 종사자 및 이용인대상 교육 콘텐츠 개발 (2022)



- 대상 : 장애인자립지원기관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과 종사자
- 자립을 준비하는 발달장애인이 서로 존중하며 만나고, 동등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인권교육 교육 콘텐츠 개발
-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활동지, 자기결정과 의사소통을 중점으로 발달장애인과 관계 맺기를 주제로 한 종사자 대상 PPT포함



함께 만들어가는 장애인 차별없는 우리동네 (활동지원사편/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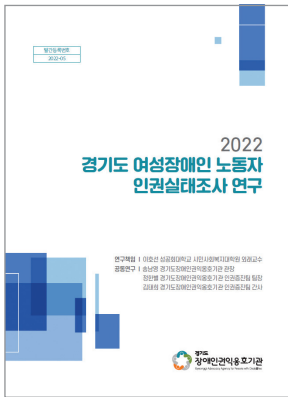


- 대상 : 경기도민, 활동지원사 및 지원기관
- 지역사회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안내서 제작 및 배포

2. 실태조사 및 교육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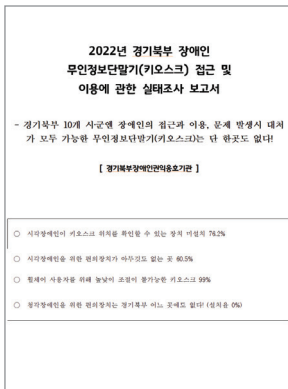
장애인학대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실태조사, 학대 예방 및 인권교육, 인식개선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학대신고의무자,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장애인, 경기도민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 실태조사



경기도 여성장애인 노동자 인권실태조사 연구(2022)

-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노동자
- 여성장애인노동자의 고용현황과 직장에서 인권침해와 차별을 당하고 있는 지 조사하고 연구



경기북부 장애인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2022)

- 대상 : 키오스크 사용 사업장 200곳 (총 200대)
- 경기북부 10개시·군내 지역당 20업체, 총 200대의 키오스크에 대해 장애인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나. 교육사업



찾아가는 인식개선 및 학대예방 교육 (2022)

- 대상 : 사회(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인 및 종사자, 학생 및 교직원, 근로자 및 고용주 등
-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시설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학대예방 및 인권교육, 인식개선교육 등 실시



장애인 인식개선 및 학대 예방 도민교육 (2022)

- 대상 : 경기도민
- 기관 소속의 인권강사단을 활용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인 및 종사자 등 교육 수강생 중심의 맞춤형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인권교육, 인식개선교육 등 실시



시민인권학교 (2022)

- 대상 : 경기도민
- 경기도민이 장애인 인권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음악, 영화, 드라마, 그림, 동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에 대해 공부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 제공



2022년 청년 권리옹호자 교육
교육 일정: 07.12(화) ~ 08.09(화) [총 10회기]

강의	교육일자	교육주제	교육강사
1	07.12(화) 18:00-19:00	오리엔테이션	담당자
2	07.12(화) 19:00-21:00	인권이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총장)	박옥순
3	07.14(목) 19:00-21:00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인권운동네트워크의사회 상임활동가)	함숙
4	07.19(화) 19:00-21:00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 (의향을 만드는 법 변호사)	박한희
5	07.21(목) 19:00-21:00	빈곤과 사회복지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정성열
6	07.26(화) 19:00-21:00	장애인 무엇인가 (비마이니 대표)	김도현
7	07.28(목) 19:00-21:00	장애인의 권리와 정책 (한국장애인차별철폐센터협의회 정책위원)	임소연
8	08.02(화) 19:00-21:00	장애인의 탈시설 (사회복지법인 프라임 대표이사, 장애와 인권 분야의 활동 상임활동가)	김장연
9	08.04(목) 19:00-21:00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박경채
10	08.09(화) 19:00-21:00	사회복지와 권리옹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청년 권리옹호자 교육 (2022)

- 대상 : 사회복지관련학과 대학생 (예비사회복지사)
- 대학 사회복지관련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사회적소수자 인권, 차별금지법, 빈곤과 사회복지, 장애인의 권리와 정책, 사회복지와 권리옹호 등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권리옹호자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한 시각과 고민을 나누는 교육 실시



인권강사단 운영(스터디 및 모니터링) (2022)

- 대상 : 도(道)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촉 강사
- 기관 소속의 인권강사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기 학습 모임 및 강의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진행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링**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학대신고 의무자 온라인 교육 과정 운영 (2022)

- 대상 :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 탑재 :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GSEEK / www.gseek.kr)
- 수강횟수 : 누적 1,783,918회 (2022.12.31. 기준)
- 도(道)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와 협업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온라인 과정 개발 및 운영

3. 정책개발사업

경기도 내 장애인 인권 현안을 확인하고, 인권 현안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을 실시 하였음. 또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제안 함.



인권포럼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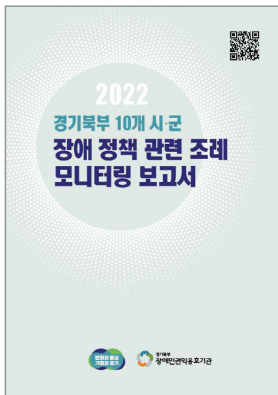
- 대상 : 경기도민
- 주제 : 경기도 여성장애인근로자의 인권상황 보고 및 개선방안
- 방법 :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youtube,zoom)

경기도 여성장애인근로자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성장애인근로자의 인권증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실시



- 대상 : 경기도민
- 주제 : 장애인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와 방임
- 방법 :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youtube)

장애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와 학대유형 중 방임의 사례를 기준으로 학대 피해의 예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토론회 실시



경기북부 장애 정책 관련 조례 모니터링 (2022)

- 대상 : 경기북부 10개 시·군 지자체
- 경기북부 10개 시·군 내 장애 정책 관련 조례에 장애인 차별적인 요소가 없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4. 협력체계 구축사업

피해장애인을 지원하고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군 및 다양한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협력체계 구축사업 (2022)

시·군 장애인복지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장애인 학대·차별예방 및 지원에 기여

- 장애인 인권정책 개선 시·군 간담회
- 공공 및 민간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옴부즈맨 사업 (2022)

- 대상 : 경기 남부 장애인복지관 소속 시민옹호인
- 내용 : 시민옹호인 간담회, 시민옹호인 역량강화교육, 장애인학대예방 캠페인, 활동수기집 제작 및 배포
- 지역사회에서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장애인복지관의 시민옹호인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 및 인권침해 예방활동을 지원하여 인권침해의 조기발견 체계형성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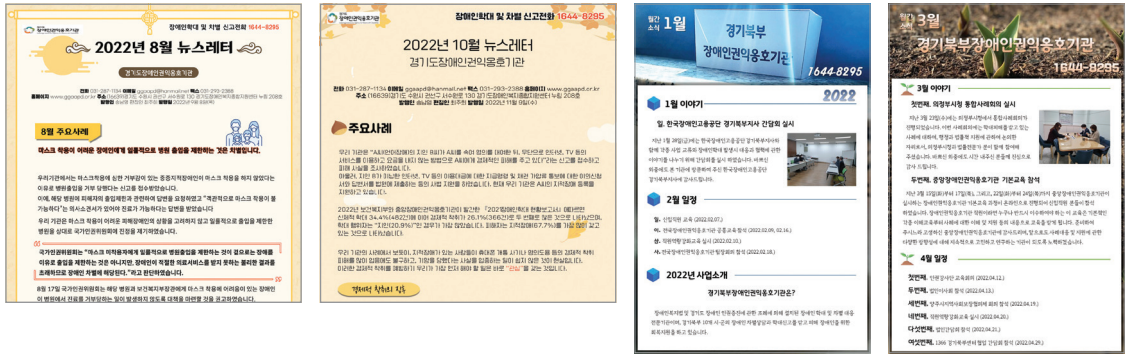
권리충전소 운영 (2022)

- 대상 : 경기 북부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 내용 : 찾아가는 장애인차별 및 학대 상담, 기관 및 학대신고 전화번호 홍보
-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차별 및 학대 관련 상담과 홍보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

5. 홍보사업

장애인학대 및 차별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온오프라인 내 각종 매체 등을 통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음. 도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모전, 캠페인,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을 진행하였음.

월간소식지



장애인 학대·차별 예방 캠페인 및 공모전



경기도민 대상 길거리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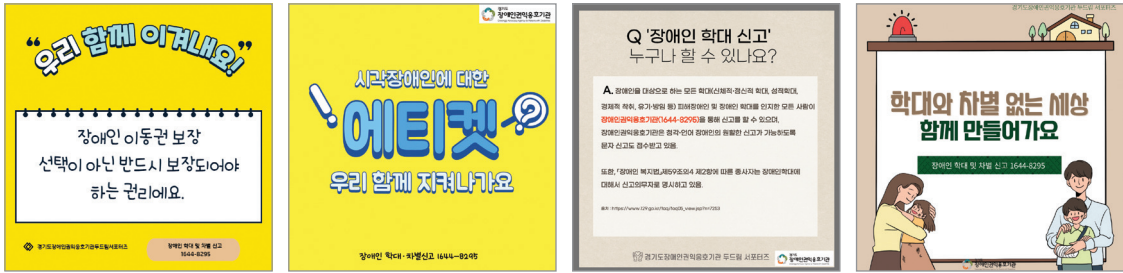


'장애인 학대·차별 예방' 웹툰공모전



장애인학대·차별 신고 전화 안내 캠페인

장애인 학대·차별 예방 서포터즈 운영



인권교육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SNS콘텐츠 제작 및 배포 (학대예방서포터즈)

홍보 콘텐츠 제작(홍보영상, 카드뉴스 등) 및 배포



'누구나 소중해, 장애인성범죄·학대 알고있나요?'
홍보영상
(공동제작 : 경기남부경찰청)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가요'
카드뉴스
(공동제작 : 경기북부경찰청)







Ⅲ




2022 경기도 장애인 학대·차별 현황보고서




피해장애인 주요 지원 사례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3. 성적 학대
4. 경제적 착취
5. 유기·방임
6. 차별 사례
7. 피해장애인쉼터 주요 지원 사례




1. 신체적 학대




<p>신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지적장애인이 자녀로부터 신체적 학대 피해를 받았다는 내용의 신고 접수
<p> 조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가 행위자의 아이를 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찼으며, 아동용 소파를 피해자에게 던져 왼팔에 맞아 약 지름 20cm의 멍이 생김 폭행 중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속 썩이지 말고 여기서(9층)에서 뛰어 내려라' 는 폭언 등을 하였음
<p>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 응급조치 :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분리/코로나 검사 및 전염병 검사지원 의료지원 : 상해진단서 발급, 정형외과 및 정신과 상담 지원 등 복지지원 : 복지 일자리 및 평생교육 연계,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신탁) 연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p> 지원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 주거 지원 위해 자원 확인해 과거 거주하던 집으로 이사 지원 주거 환경 개선 및 안전망 구축 위해 유관기관 연계 및 자원 지원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공공신탁)를 통한 금전 관리 진행 장애인활동지원사 매칭되어 서비스 지원
<p>신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적장애인으로 의심되는 여성이 자녀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신고 접수
<p> 조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위자는 '빵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빵을 먹었다'는 이유로 빗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함 피해자의 허벅지, 팔, 눈에서 멍 자국이 발견되었음 이전부터 수 차례 행위자의 신체적 학대가 있었으나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함
<p>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 응급조치 :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분리/코로나 검사 및 전염병 검사지원 사법지원 : 피해자 경찰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 거주지원 : 체험홈 연계 복지지원 : 장애인 인권 119 긴급지원사업을 통한 장애인 등록 절차 지원,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신탁) 연계 심리지원 : 심리상담센터 연계 10회기 지원
<p> 지원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적장애 중증 장애 등록 심리상담 10회기 진행 쉼터 퇴소 이후 체험홈 입주 자립생활센터 진행 사업 근로 진행 중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공공신탁)를 통한 금전 관리 진행




<p>신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2차 시설조사 진행함 • 시설 라운딩 중 이용인 생활실에서 잠금장치가 설치된 침대 3개 확인 • 잠금장치가 있는 의자 2개 및 문의 잠금장치 확인되어 인지 접수
<p> 조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인 면담 내용 중, “문은 밖에서 잠가요, 잘 때는 돌아다니는게 아니니까...”, “잘 때, 문 잠그고 자요, 열리면 돌아다니니 잠가야해요” 등 진술 확인 • “의자는 밥먹을 때, 혼날 때 사용해요” 라는 이용인 진술확인 • 종사자 면담 내용 중, “해당 장치 및 의자, 침대에 대해 개선하겠다” 라는 진술 확인됨
<p>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지자체를 통한 인권친화적 시설 환경 개선 요청 • 부적절한 보조기기 사용 개선 요청 • 종사자 인권교육 요청
<p> 지원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 손잡이 변경 및 부적절한 가구 폐기 처분 등 완료 •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설 환경 개선 완료 • 개인별 특성에 맞는 보조기기 지원 계획 수립 •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p>신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동이 도전적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시설장에 의해 정신병원 입원 및 과도한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도록 하는 등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 접수됨
<p> 조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원 진단서, 약물처방전, 행동증재보고서 등 서류 검토한 결과, 약물 부작용에 대한 기록(‘눈이 풀려있다’, ‘침을 흘린다’, ‘손 떨림’, ‘무관심’)이 확인됨 • 당사자 관련 영상 확인 결과, 일부 행동(교사에게 반말 사용 등)이 확인되나 시설장이 주장하는 기물 파손, 욕설 등의 행동은 확인되지 않음
<p>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지원 : 병원 및 비장애입소아동 조사 등의 어려움으로 국가인권위 진정, 후견인 변경 신청 • 주거지원 : 병원퇴원 및 전원조치 지원
<p> 지원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위 해당 시설에 대한 처분 및 관련 병원에 대한 조사 등 권고 • 피해자 병원 퇴원 및 전원조치 완료 • 후견인 직권 취소

2. 정서적 학대




<p>신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성년자인 장애아동이 “집에 가기 싫고, 죽고싶다”,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고 쓸모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된다” 등 당사자 상담 요청으로 신고 접수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는 부모의 이혼으로 모의 부재를 많이 느끼고 있고, 조부모와 생활하고 있으나 정서적 교감은 거의 없음 • 조부모의 폭행 및 폭언이 있었음을 확인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지원 : 심리상담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자원 연계 • 부모상담 : 학교 수업을 힘들어하여 위탁교육을 위한 상담 및 자녀의 정서적 지원을 위한 부모 상담 • 학교, 부모, 지역청소년상담센터 등과 연계하여 사례회의 진행
 지원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조부모가 아닌 부와 생활하며 직업학교로 전학 • 심리상담지원은 피해자 및 피해자 부의 거부로 진행되지 않음




<p>신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장애인 피해자와 활동지원사 행정복지센터 방문 • 상담과정에서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멍이 발견되어 확인하니 “친오빠가 활체어로 밀었다”라고 진술함 • 친오빠에 의해 폭행 및 학대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 접수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조사에는 피해자 피해사실 진술 거부함 • 그러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행위자인 오빠의 장애로 인한 일상활동의 제약이 심각하다고 생각되어 잠재위험사례로 판단하고 주거지원을 하기로 함 • 지원과정에서 피해자 행위자로부터 추가 폭행 발생한 사실 인지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응급조치 : 의료지원 및 피해장애인쉼터 입소 / 코로나 검사 및 전염병 검사 지원 • 주거지원 : 학대 피해 원인 중 하나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지원(LH공공전세임대주택 신청 및 입주지원) • 복지지원 : 피해자 활동지원서비스 및 행위자 맞춤형돌봄서비스 등 복지지원연계 • 지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례관리 의뢰 • 의료지원 : 행위자 치료 및 입원 지원 • 교육지원 : 행위자 재학대발생 방지를 위한 교육
 지원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 공공전세임대주택 입주 • 복지지원 연계를 통하여 피해자 활동지원서비스 및 행위자 맞춤형돌봄서비스 지원 • 행위자 학대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이후 재발방지 약속 • 지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례관리 • 행위자 치료완료로 건강회복

<p>신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장애인 여성이 남편에 의해 가정폭력 피해를 받았다는 내용의 신고 접수
<p>  조사결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지속적인 정서적 피해가 있었음 • 행위자는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망치를 이용하여 냉장고, 방문 등을 내려쳐 자택 기물을 파손함 • 피해자는 행위자와의 이혼 절차 진행 중임 • 피해자에게는 세 자녀가 있으나 모두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음 • 피해자는 가정폭력 후유증 및 자녀 분리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함
<p>  지원내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지원 : 관할 시청 여성정책과 등 지원 자원 연계 의뢰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정서적지지
<p>  지원결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 확인 • 관할 시청 여성정책과 연계 심리상담 진행 • 관할 시청 ‘갈꿈이 사업’ 지원 • 관할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p>신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자가 지적장애인 조카의 뺨을 때리고 폭언을 한다는 내용의 신고 접수
<p>  조사결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와 행위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폭행 관련하여 확인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와 행위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 시 ‘정신병원에 보낸다’는 이야기를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 한 사실을 확인함 •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폭언하고 혼낸 적이 있으나, 지원 중 피해자가 욕을 많이 하고 고집이 매우 강해 제재하고자 한 행동이라고 함 • 피해자는 회귀질환으로 인해 우울, 분노조절 장애 등의 정신과적 질환이 있어 행위자가 피해자의 치료 등을 위해 의료지원을 7년째 하고 있다고 함
<p>  지원내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지원 : 피해자와 동행하여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진행 장애등록관련(지적장애 중복 장애 등록 및 장애 정도 변경)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관련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등록 관련
<p>  지원결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청각장애가 경증, 장애 정도 변경 신청 관련 정보제공 및 안내하여 가족 지원으로 중증으로 변경 등록 • 회귀질환으로 인해 정신과 병원 진료 중, 전문의 소견으로 지적장애 추가 등록 정보 제공하여 등록 • 현재 행위자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행위자가 피해자의 병원 진료 등 전반적 복지지원을 지원하고 있고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 예정




3. 성적 학대

신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장애인 여성이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피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접수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지도 감독을 맡고 있는 관리자임 • 행위자는 다수의 지적장애인 여성 근로자들을 끌어안고 옷 속에 손을 넣어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동의 없는 성적 행위를 하였음 • 장기간, 여러 차례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임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지원 : 행위자 고발 조치 및 사법 모니터링 진행 • 심리지원 : 심리상담센터 연계 상담 지원
 지원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상담 10회기 진행 • 재판 결과 징역 6년, 성폭력 예방 교육 40시간, 관련 기관 취업 정지 10년 선고 신고 내용




신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장애인 여성이 수면제를 이용한 성 학대 피해를 받았다는 내용의 신고 접수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자는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의 남편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였음 •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넣은 술과 커피를 권유하였고 이후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함 • 행위자는 과거 동일한 수법으로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됨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응급조치 : 해바라기센터 응급 키트 검사 동행 • 사법지원 : 피해자 경찰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 수사기관 협조 및 관련 서류 제출, 재판 동석인 참석 • 심리지원 : 임상심리평가 진행하여 검찰청 제출
 지원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 결과 징역 1년 선고 • 피해자 강원도 소재 원가정 복귀 • 장애인보호작업장 근로 중






신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철에서 만난 외국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며 경찰에 고소한 상황이니 도와달라는 내용의 신고 접수됨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경찰에서 CCTV로 강제성 확인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지원 : 해바라기센터 신뢰관계인 동석 지원 • 복지지원 : 지적장애만 등록되어 있으나 면담과정에서 지적장애 의심되어 지적장애 등록 지원
 지원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 송치 • 지적장애 등록 완료




신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로부터 청각장애인 피해자 성추행 피해로 인한 경찰 조사를 예정으로 신뢰관계인 동석 요청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는 청각장애인으로 수어가 아닌 구화와 손짓, 몸짓으로 소통이 가능하며, 지적장애 의심 소견도 있음 • 구체적 진술에 어려움은 있으나 피해내용과 시기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 함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지원 : 해바라기센터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참석 - 국선변호사 선정되었으나 재판 불출석 등 지원없어 변호사 선임을 통한 소송지원 • 복지지원 : 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 의뢰
 지원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심선고 / 1년 6개월 실형(법정구속),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장애인관련 기관 3년 간 취업제한, 신상공개 명령




4. 경제적 착취

<p>신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미등록) 중 타인에 의한 금전관리 및 과도한 보험 등 경제적 착취가 의심되는 내용의 신고 접수
<p> 조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관련 통장을 행위자가 보관하며 인출하여 사용한 피해금액 확인 • 피해자 외 배우자의 국민연금 행위자가 수령 • 행위자에 의해 가입된 보험 내역 총 41개 확인(해지된 보험 포함) • 조사진행 시 피해자를 찾아와 거짓 진술 강요로 2차 가해 확인
<p>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응급조치 : 피해장애인쉼터(장애자녀와 함께) 입소 / 코로나 검사 및 전염병 검사 • 사법지원 : 경찰 고발 및 피해자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 지원 • 복지지원 : 피해자 및 자녀 지적장애 등록 지원 피해자 및 자녀 활동지원사 신청 지역장애인복지관 사례관리 의뢰 • 주거지원 :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이사 등 주거 지원 • 심리지원 : 임상심리평가 진행하여 경찰청 제출 • 병원 입원중 배우자 면회를 통해 심리적 안정할 수 있도록 지원
<p> 지원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장애인 등록 • LH 전세임대주택으로 이사 완료 • 활동지원사 지원 및 지역장애인복지관 사례관리 • 학교전학 지원 및 교복, 학용품 등 지원 • 보험 취소를 통한 일부 보험금 환급 완료 • 경제적 착취 관련 준사기로 검찰 송치






<p>신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에 의한 경제적 착취에 대한 신고 접수
<p> 조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자는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으로 되어 수급비 및 장애연금 등을 인출한 이력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확인 • 피해자의 활동지원사에게 매달 10~30만원의 현금을 생활비로 지급하고 제외한 금액을 행위자가 사용
<p>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에 성년후견 심층 감독 요청 • 후견인 변경 청구 및 경찰 고발 조치 등을 위한 변호사 선임 등 소송구조 및 사법지원 • 법원 출석 등 이동지원 및 정서적지지
<p> 지원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자 성년후견인 종료 및 특정후견인 변경 선임 • 선임된 특정후견인과 면담을 통해 지원계획 수립 • 착취 금액 일부 반환 조치 완료




<p>신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 장애인으로 의심되는 여성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요금을 납부 하지 않은 내용의 신고 접수
<p> 조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는 언어장애 경증 등록되어 있음 • 행위자는 피해자의 지인으로 피해자에게 ‘명의만 빌리는 것이지 요금은 본인이 납부하겠다’ 약속하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줄 것을 요구함 • 피해자는 개통하는 휴대전화 기종, 요금제 등 관련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서명만 한 뒤 귀가하였음 • 행위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 외 TV, IOT, 인터넷 서비스에 추가 가입함 • 이후 미납금 고지서 및 채권가압류 의뢰통보서가 피해자 자택으로 발행되었고 행위자와 행위자의 아내는 피해자의 연락을 피해음
<p>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지원 : 지급명령이의신청서 및 분할납부확약서 법원 제출 • 복지지원 : 장애인 인권 119 긴급지원사업을 통한 장애인등록 절차지원 • 심리지원 : 임상심리평가 지원
<p> 지원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장애 경증에서 지적장애 중증 변경 등록 • 채무 변제 기한 및 납부 방법 관련 신용정보회사와 중재 • 행위자 아내 미납요금 분할 변제 진행 중




<p>신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장애인 여성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여 현금을 갈취하고 성추행한 내용의 신고 접수
<p>  조사결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와 행위자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만남을 주선함 •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분증과 OTP카드, 체크카드, 휴대전화를 건네 줄 것을 요구함 • 이후 행위자는 피해자의 명의로 6건의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받은 금액과 피해자의 예적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시킴 •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음
<p>  지원내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지원 : 사법 모니터링 및 배상명령신청 지원 예정 • 복지지원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진행 • 심리지원 :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심리상담 연계
<p>  지원결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 수사 진행 중 •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진행 •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연계






5. 유기·방임

신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가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병원에 유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신고 접수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피해자(장애인학대)는 노인학대(부모, 장애인학대의 행위자)의 행위자로 경찰에 접수되었음 • 경찰의 응급입원 의뢰로 피해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입원 이후 부모는 연락처 변경, 연락 두절 등으로 피해자와의 관계를 단절하였음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지원 : 피해자 관할 장애인인권센터 협조 요청 • 거주지원 : 피해자 거주시설 입소 관련해 상담 지원 • 기타지원 : 거주시설 입소 후 적응 등 모니터링
 지원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관할 거주시설 입소 지원 • 피해자 관할 장애인인권센터에서 사법 절차 진행 중(고발)




신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에 의해 남매(자폐성장아/지적장애 의심)가 가정 내 물리적 방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 접수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방문을 했을 때, 거주 공간에 각종 쓰레기가 있었으며,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음 • 거주하는 환경이 매우 불결하여 피해자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며, 신체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방임이 확인됨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응급조치 : 학대피해장애아동 쉼터 분리 • 복지지원 : 장애등록 지원 (장애인 인권 119 긴급지원사업) • 기타지원 : 관할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의하여 피해자 지원 자원 연계 • 쉼터 입소 후 적응 등 상황 모니터링
 지원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입소 • 지적장애 등록




<p>신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거주시설 시설 조사 진행 시, 방임 의심 인지 접수됨.
<p> 조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내부 환경으로 냉, 난방용품 설치 미흡, 이용인들의 의류 공용 및 재사용, 생활실 악취 및 먼지 등 청결상태 불량함 • 이용인 프로그램으로 '시설 내 2층 계단오르기', '색칠공부' 외 진행 프로그램 없음 • 시력이 좋지 않은 이용인에게 적절한 보조기구(안경 등) 제공하지 않음
<p>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임으로 판단 • 자립의사 밝힌 이용인 체험홈 입소 지원 • 원장에 대해 인건비 지급기준 없이 과도하게 지급된 인건비 점검 요청 • 인권지킴이단 운영미흡, 서류미비 등 시설운영에 대한 지도점검 요청
<p> 지원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인 체험홈 입소 •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 시정명령 • 서류미비치등에 대한 개선명령 및 과태료(500천원) 부과 • 이용인의 보조기기 제공 완료 • 지자체 분기별 1회이상 지도점검 실시예정




<p>신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편 및 시동생 등 가족의 폭언, 폭행에 대한 학대신고 및 장애 등록 지원을 위한 신고 접수
<p> 조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를 집안에서만 생활하도록 하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식사 등의 기본적인 생활 불가능 • 시모 및 시동생 등으로부터의 폭언 • 남편의 외도 및 폭언, 폭행으로 이혼 진행 중 • 지적장애 소견있으나 뇌병변6급으로 등록되어 있어 기초생활수급 미해당으로 생계 어려움 발생
<p>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지원 : 지적장애 등록 지원 긴급복지서비스 신청 • 사법지원 : 이혼소송에 대한 법률자문
<p> 지원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복지서비스 대상 선정 • 학적부 및 성인기 이전 병원기록 없어 미해당 판정이었으나 의견서 제출을 통해 지적장애 중증 등록 완료 • 기초수급자 선정 • 이혼 확인



6. 차별 사례




<p>신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각장애인 피해자가 직장인 신용대출을 위해 비장애인 지인과 함께 은행에 방문하였으나, 핸드폰 모바일로 신청을 하라며 거부를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 접수
<p> 조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위자는 시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대출 신청 서류를 작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모바일을 권유하였다고 하며, 점자나 음성안내, 대필 등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음
<p>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은행 지점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차별행위임을 안내 인권교육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요청
<p> 지원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차별 피해자에게 사과 행위자 포함 종사자 인권교육 진행




<p>신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평생학습원 내 장애인 화장실과 관련하여 경사거울, 세면대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의 신고 접수됨
<p> 조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면대의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규정에 맞게 설치가 되어 있었으나, 경사 거울의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고 거울 또한 정면이 아닌 측면에 설치가 되어 있어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이용하기 어려웠음 장애인 칸 내부에 비상용 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수평/수직 손잡이 또한 한쪽에만 설치되어 있는 등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하였음
<p>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 지자체에 편의시설 개선 권고
<p> 지원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면 거울, 수평/수직 손잡이 추가 설치 등 조치 완료

<p>신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 쓰는 것에 매우 심한 거부감이 있는 A씨(지적장애)가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방문하였음. A씨가 병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에 들어올 수 없다고 병원 출입을 제한함
<p> 조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는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며, 이로 인해 마스크도 착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장애가 있는 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병원 출입 제한을 함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외래진료와 장애 재진단을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음
<p>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병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중재(공문 발송 등) •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로 진정 제기
<p> 지원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 인정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대책 마련 권고



7. 피해장애인쉼터 주요 지원 사례

<p>입소사유</p>	<p>친부에 의한 성적 학대 의심으로 쉼터에 긴급 입소함</p>
<p> 피해자 욕구</p>	<p>아토피 호전, 부친과 분리된 거주시설 입소, 지속적인 의무교육을 위한 쉼터 인근 초등학교로의 연계</p>
<p>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지원 : 정서적 안정을 위해 심리상담 및 유관 기관과의 일반상담 30회 진행 • 의료 지원 : 아토피 관리, 감기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진행 • 거주지원 : 장애인거주시설 연계 • 프로그램 지원 : 교육(개별학습 등) 및 문화(야외나들이 등) 14개 프로그램(337회) 지원 • 복지지원연계 : 쉼터 원장, 팀장 및 지역 내 교육지청 및 00군 사회복지과와 함께 초등학교 전학 연계, 활동지원사 연계를 위한 신청 및 심사 지원, MOU 체결한 기관(장애인보호작업장, 캘리그래피 동아리) 연계 프로그램, 지역 사회 내 후원물품(원피스, 신발, 장난감 외 27종) 지원
<p> 지원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교육을 위한 지역 내 초등학교 특수학급 등교 및 다양한 서비스 지원 • 대상자의 등학교 활동을 위한 활동지원사 연계 • 심각했던 아토피가 호전되어 퇴소 • 입소한 시설에 사후관리차 연락한 결과 정서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시설에 잘 적응하여 또래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다고 함

<p>입소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가 근로 중인 식당 주인과 남성 지인에 의한 임금갈취 및 성적 학대 의심사유로 쉼터에 입소함
<p> 피해자 욕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과는 연락하기 싫음. 왼쪽 중지 발가락 붓기와 통증에 대한 치료, 개인 채무 해결,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을 통한 취업, 상실된 치아(어금니)와 깨진 치아 치료 희망
<p>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지원 : 장애인단용 임상심리평가, 매주 1회 집단 심리치료프로그램(심리미술) 참여 • 의료지원 : 협약된 치과와 연계하여 임플란트 3개, 충치 및 신경치료 등 1,100만 원 가량의 치료비 무상 지원, 고지혈증 진료 및 약복용 지원, 좌측 발 거대세포종 제거수술 지원, 코로나백신 예방접종 등 • 교육/훈련 : 바리스타 교육 및 핸드드립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금전관리 훈련, 생활지원을 위한 작업수행분석 및 훈련, 수어훈련 • 사법절차지원 : 경찰조사 1,2차 과정 및 사건내용 모니터링 • 거주지원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체험홈 입주 연계 • 복지지원연계 : 장애등록 및 수급권 신청, ○○복지재단 의료비 지원연계,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 신탁서비스 연계
<p> 지원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홈 입주 후 채무 회생절차 신청하여 변제 중임, 나머지 금액은 신탁제도 이용 • ○○○ 사내 카페 장애인 바리스타 훈련생으로 취업 후 정규직으로 취업함 • 장애등록 및 수급권 획득으로 기본소득 및 사회보장서비스 획득 • 치과 치료 및 체중관리 등으로 고지혈증이 완화되었으며, 사회활동 시 자신감 있는 태도로 생활하고 있다고 함

부 록

1.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주요 업무 소개 및 현황
2. 경기도 내 인권 관련 기관 소개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1.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주요 업무 소개 및 현황

주요 업무 소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학대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권익옹호 목적으로 2017.1.1.부터 설치·운영되는 법적기관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장애인복지법」 제59조11)

학대피해장애인의 발견 및 피해회복지원, 장애인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전문기관 설치(중앙 1개 기관, 지역 19개 기관)

장애인학대예방과 방지의 의무(「장애인복지법」 제59조10)

장애인학대신고체계 구축운영

장애인학대신고전화 1644-8295(전국공통)

사후관리(「장애인복지법」 제59조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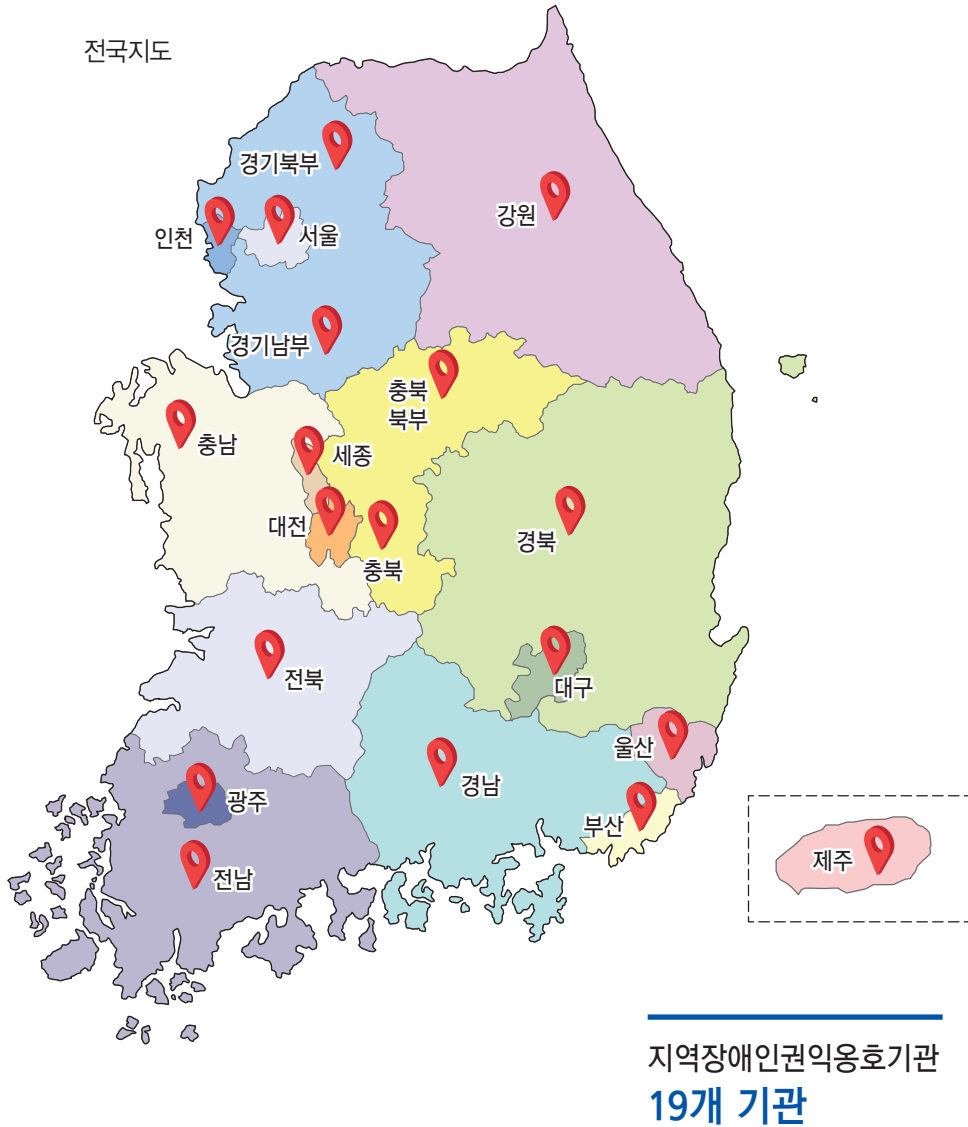
사례종결 후 방문·전화상담 등을 통해 피해장애인의 안전확보 및 장애인학대의 재발방지 등을 위한 지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연구·프로그램 개발, 지역기관 지원 등을 담당,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개별 학대 사건에 대한 지원을 실시

구분	주요 업무
<p style="text-align: center;">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능력개발 •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정책의 개발 •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장애인학대 관련 통계의 생산 및 제공 • 장애인권익옹호에 관한 국제교류
<p style="text-align: center;">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 피해장애인 보호 및 피해회복 •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현황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등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현황





기관명	전화	주소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02-6951-179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길 21, 1412호 (코오롱디지털타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033-264-829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로 199, 2층 (석사동, 경림빌딩)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031-287-113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누림208호 (오목천동,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031-851-1007	경기도 양주시 고삼로43번길 28, 306호 (삼송동, 경기도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055-603-829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5, 210호 (중앙동, 리제스타워)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054-282-829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4-5 (대잠동)
광주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062-716-1633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19, 2층 (치평동, 나라빌딩)
대구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053-716-8295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22길 2, 403호 (신청동, 서한코보스카운티)
대전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042-631-5667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99, 3층 (용전동, 루루빌딩)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051-715-8295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16번길 10, 6층 (금복빌딩)
서울특별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02-3453-95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416, 2층 (대치동, 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044-905-8295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07, 121호 (보람종합복지센터)
울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052-260-829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311, 2층 (신정동, 연세H빌딩)
인천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032-425-0900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869, 1801호 (주안동, 르네상스타워)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061-285-8298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633, 2층 (석현동, 힐링타워)
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063-227-8295	전라북도 전주시 흥산남로 11-10, 5층 (경희궁 빌딩)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064-900-969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귤로5길 21, 1층 (이도2동)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041-551-8295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56, 3층 (천안법조프라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043-287-8295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63번길 61-54, 303-1호 (분평동, 라데팡스타워)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043-847-8295	충청북도 충주시 갯고개로 166, 3층 (연수도)

2. 경기도 내 인권 관련 기관 안내

기관명	유형	전화	주소
경기도 인권센터	경기도직영	031-8008-234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9층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경기도직영	031-8030-4541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 북부청사 별관 4층, 상담실 별관1층)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경기도직영	국번없이 1372, 031-251-9898, 031-888-985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중앙로 140, 수원컨벤션센터 515호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경기도직영	031-8008-555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6층
경기 예술인지원센터	공기관대행	031-231-0870, 088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경기상상캠퍼스 교육1964동 1층
경기도외국인 인권지원센터	민간위탁	031-492-9347~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4층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기본개요

◆ (목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인지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예시 : 사회복지시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의료기관 등)의 장과 종사자 등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 (내용)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1644-8295)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방법

누구든지 장애인학대를 알게 되면 장애인학대 신고번호(1644-8295)로 신고할 수 있다.

전국 19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신고를 받으며, 신고자와 가까운 위치의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사례를 담당할 전화 외에도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한 신고, 직접 기관을 방문하는 방문 신고 등이 가능하며, 2021년부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이 학대를 받았을 때 문자(SMS)와 카카오톡으로 신고할 수 있음.

신고 불이행 시 제재

◆ (과태료)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3의 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5]

신고자 보호 조치

◆ (내용)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하여 신고자 보호(법 제59조의6)

신고의무자 교육 개요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의 6

◆ (교육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 (교육내용) 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④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 제1항

◆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 (교육콘텐츠)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과정 및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간자료**나 유튜브 채널 동영상 활용 등

* 수강사이트(<https://www.gseek.kr>)

** 홈페이지(www.naapd.or.kr)→ 정보→발간자료→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 (문의) 경기도 평생학습지원센터 (☎1600-0999),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02-6951-1790),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031-287-1134),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031-851-1007)

교육실시 및 교육 포함 여부 결과 제출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6항 및 제7항

- ◆ (내용) ①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실시 여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②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내용 포함 여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결과 제출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신고의무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시설 등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동법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사회복지요원을 포함한다)
 2.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 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 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 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12.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22.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⑦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의5(불이익 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장애인학대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 상실의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 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을 통한 임금, 상여금 등의 차별적 지급
5. 교육·훈련 등 자기 계발 기회의 박탈 및 예산·인력 등에 대한 업무상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근무 조건의 차별적 조치
6. 요주의 대상자 명단의 작성·공개, 집단 따돌림 및 폭행·폭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적·신체적 위해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조사 및 그 결과의 공표

제59조의6(장애인학대범죄 신고인에 대한 보호 조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제8조(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제10조(영상물 촬영), 제11조(증인 소환 및 신문의 특례), 제12조(소송진행 의 협의 등), 제13조(신변안전조치)



2022 경기도 장애인 학대·차별 현황보고서

인쇄일	2023년 11월
발행일	2023년 11월
발행인	경기도
편집인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송남영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박현희 경기도피해장애인쉼터_보듬 원장 채현경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 원장 이주목 경기도피해장애아동쉼터(남아,여아) 원장 최승호
편집위원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정한별, 김미리)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백주현, 이나영) 경기도피해장애인쉼터_보듬 (유현아)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 (임고은) 경기도피해장애아동쉼터(남아,여아) (송현호, 구수진)
발행기관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Tel. 031-8008-4336)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Tel. 031-287-1134)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Tel. 031-851-1007) 경기도피해장애인쉼터_보듬 (미공개)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 (미공개) 경기도피해장애아동쉼터(남아,여아) (미공개)
인쇄	블루애드 (02-6082-7076)



2022 경기도 장애인 확대·차별 현황보고서

